

第16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4.8.16.~8.2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67
I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69
II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8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195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	197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07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3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19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227
7.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31
8.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37
9.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53
10.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	255
11. 중기지방교육재정수정계획(2002~2006)보고의견 .....	259
1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277
1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81
1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89
1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97

-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305
- 17.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313
- 18.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317

## V. 별 책 부 록

-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3.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6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69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6일 (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11.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2002~2006)보고의건
12.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13.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교육감 제출)
8.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0.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2.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2002~2006)보고의건(교육감 제출)
1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제169회-제1차 본회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부수리 관계로 부득이 금번 임시회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8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8월 7일 공고 제2004-8호로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

를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2006학년도 9월 및 2007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 중기지방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 제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0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7월 1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4년 7월 20일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제출된 안건 중 2006학년도 9월 및 2007학년도 학교설립 계획안을 제외한 단재교육상조례개정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과장이 보고한 대로 금 회기에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규정한 1회기 임시회 최대 회기인 5일 동안에 안건을 모두 심도있게 처리하기에는 의사일정이 부족한 바 부득이 제출된 안건 중 2006학년도 9월 및 2007학년도 학교설립계획안은 설립예정교가 총 열두 개교로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6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중기지방교육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청취하신 뒤에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8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 의장 이상일

[제169회-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전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 교육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의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 내지 3조의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셋째, 안 제4조제1항에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넷째,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9 내지 15인으로 하고 위원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 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 업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영장사용료 징수기준을 1일 회원 및 월 회원, 단체입장으로 구분하여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일반인별로 징수금액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충북수영연맹에서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충청북도학생회관 수영장 사용료는 전국 수영장의 평균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였고,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 수영장 사용료 인상 시기가 도래된 점을 고려해서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주농업고등학교 실외수영장을 연중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영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관리 운영의 주체를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8.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획안

- 10.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1.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 12.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11시 1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구현과 21세기 선진 교육을 지

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안설명과 2002년에서 2006년도의 중기 지방교육재정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고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신설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별첨 6)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와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외부 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중 본청 소속 공무원 위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 위원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7)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공간 및 에·체능 교육활동 장소 활용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 가경초등학교 외 4교의 다목적교실 4,818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47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제고 여건조성 및 원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황간고등학교 외 1교의 기숙사 2,130평방미터에 17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투자하는 재산조성비는 총 7개교에 64억 6,2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999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구)어룡초등학교로 진입로가 좁고 부지 내 음용수 공급이 어려워 그동안 대부자 없이 보존 관리하여 왔으며, 향후 특별한 활용 계획도 없으므로 매각하여도 직접적으로 교육에 지

[제169회-제1차 본회의]

장이 없는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 참 조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별첨 8)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여 주신 잉글리쉬타운 건립 추진이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 미반영, 의견수  
렴 미흡 등 업무추진 절차를 사유로 도의  
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쉬타운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우리 도내 학생들이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외국어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에 추  
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  
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과 교육비특별회  
계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정상  
화, 유아 특수교육 진흥, 과학실업교육  
내실화, 학생교육복지 증진, 교육환경 개  
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87억 7,804만원에서 209억 369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497억 1,4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30억 5,24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9억  
3,969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감  
40억 8,967만원, 주민부담수입 3,443만  
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  
화로운 학력제고 사업비 39억 852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비 83억 406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을 위한 사  
업비 9,000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  
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억 9,575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 사업  
비 102억 8,579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61  
억 7,922만원, 사유지 매입비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  
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하였으  
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  
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나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  
류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에 실음)

▶ 참 조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9)  
(끝에 실음)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행별설명서(별책 2)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별책 3)

다음은 2005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충주 금릉초등학교 개교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충주중앙초등학교와 칠금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릉초등학교를 2005년 3월 개교로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학교 개교 예정 부지 소유지의 매각 반대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개교시기를 2006년 3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2005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별첨 10)

끝으로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를 실적기간으로 재정운영 내용을 분석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 수립한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2003년 10월 28일 교육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이후에 동 계획 수립 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누락된 잉글리쉬타운 건립 계획을 2004년도에 반영하고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당초 2005년도에서 2004년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참 조 : 2002.~2006.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정계획(별첨 11)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안설명과 2002년에서 2006년도의 중기 지방교육재정 수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3.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30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31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웅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근,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4)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5)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별첨 6)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7)
- ▶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8)
-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9)
- ▶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별첨 10)
- ▶ 중기지방교육재정수정계획(2002~2006)보고의건(별첨 11)

※ 별 책 부 록

-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별책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20일 (금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포함니다.

### ● 의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전원 교육국장님과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단재교육상조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 의장 이상일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고규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규강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1속직수당 책정 방법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일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1인 1회당 3만원

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본 조례제정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입법의 필요성, 적합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2)

(끝에 실음)

그러면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단재교육상을 시상함에 있어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하고 시상부문의 교원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및 심사위원수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유치원 교육이 누락되어 조문내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와 제3조 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초·중등 앞에 유 가운데점(·)을 삽입하고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의 심사위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그 기본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학생부문이 삭제되어서는 안되며 이전에 교육위원회의 부결사유였기에 충북학생상시상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소수의견과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사유가 모든 학생상을 한데 묶어 단재교육상에 버금가는 새로운 학생상 시상계획을 추진하려함에 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참 조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 운영 주체가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사용료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제명은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그 적용대상과 내용을 함축성 있게 하고 조문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중 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를 공공기관사용및징수에관한조례로 하고, 별표2의 "일일회원"을 "일일입장"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4)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

라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경되는 대상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2항의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를"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5)  
(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및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려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 항 호, 상호호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2 제2호 내지 제4호 중 "있는 경우"

를 “있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신설되는 비밀엄수의무 강화 조항은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내부고 발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는 내용 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노사정위원 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 다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시·도 간 통 일된 안이 나올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 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6)  
(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 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재정 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와 열린교육 행정구 현을 위해 위원회 위원 중 소속공무원 10 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사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외부인사의 참 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 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 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7)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 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7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8월 18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취득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확인하신 사항으

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학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

(11시 1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2005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충주 금릉초등학교 부지매입 지연으로 개교 시기를 당초 2005년 3월 1일에서 2006년 3월 1일로 1년간 늦추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대책과 개교 지연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 등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학교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송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송대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8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87억 7,804만 2,000원에서 209억 3,690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497억 1,49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30억 5,245만 1,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9억 3,969만 2,000원,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3,44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40억 8,96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별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129억 519만 7,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9,962만 3,000원, 교육행정에 45억 9,160만 8,000원, 기타경비에 33억 4,048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121만원으로 혁신분권팀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2,12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에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의 재원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유아 특수교육 진흥 등 학력제고 사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경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

단됩니다.

다만 교육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및 배분에 있어서도 학교 간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 목적에 맞는 재정투자 균형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외 자체 지원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시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12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성여중 다목적교실 보수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 안전진단 등을 위하여 보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별첨 18)

(끝에 실음)

### ● 의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전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2,12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1조 1,497억 1,495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옥경 교육위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지만 5분 발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상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의장이 여러 가지로 마음도 찻찻하고 왜 허가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69회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으로 불허합니다.

첫째로 제4대 교육위원 개원 이래 총 25회 회의를 하면서 6회에 걸쳐 5분 발언을 신청 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제165회, 167회, 168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내용 중 일부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본인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본인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동료위원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21조, 의제 외 발언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169회 임시회 1차로 2004년 8월 18일 신청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24조제2의1항에 의거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허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8월 19일 16시 50분경 재차 신청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의 내용에 안건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심의된 사항이며 진 위원 소수의 의견까지 첨부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재차 거론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바람직한 교육위원회를 위한 제언은 종전에도 진 위원님께 들은 바가 있고 교육위원회 발전이나 회의진행 등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2004년 8월 25일 서울서부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교육자치발전대회에 진 교육위원님도 초청된 상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곳에서 바람직한 교육위원회를 위한 제언을 고려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내용이

회의규칙에 적합한지를 의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5분 발언 내용과 원고를 제출하여 의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 진옥경 위원

제가 다시 그것을 신청하였을 때 그것이 요지가 불분명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의 그 신청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함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거나 소수의견을 충분히 적시한 그런 내용을 다시 되풀이할 것이라는 예단으로서 지금 저의 5분 발언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포함하는 제 조례안 심의에 대한 태도를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저는 적법이나 불법이나 혹은 탈법이나의 저의 의견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려고 했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론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

닌데 의장님은 지나치게 그것을 예단해서 지금 5분 발언을 불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장님이 저와 그 내용을 충분히 의논하시지 않고 불허를 결정하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저는 오늘 5분 발언과 여기에 관련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아마 사전에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용은 지역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발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감합니다.

● 의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금번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심도있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폐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헌,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2)
-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별첨 13)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4)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5)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6)
-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17)
-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18)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9.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송 대 현	송대현
의사국장	이 상 기	이상기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69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4. 8. 16. ~ 8. 20.(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월 16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4. 8. 16. ~ 8. 20.(5일간) 2.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7.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2005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 11. 중기지방교육재정수정계획(2002~2006)보고의 건 12.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3.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 " " " " "
8월 17일(화)	<input type="checkbox"/>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8월 18일(수)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8월 19일(목)	<input type="checkbox"/> 예산·결산소위원회	
8월 20일(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2005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69-1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8월 일 (제 169 회)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8월 1일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1
----------	-------

제출연월일 : 2004. 5.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 기관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9~15인으로 하고, 위원 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기타 : 입법예고(2004. 4. 23. ~ 5. 12.)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도부문
2. 학술부문
3. 공로부문

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초·중등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초·중등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
3. 공로부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사립학교 포함) 직원, 일반인, 단체 및 기관

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

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추천조서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체  
교육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

제7조(수상후보자 심사)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  
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

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  
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  
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시상)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단재교육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제3조제2항 관련)

부 문	공 적 심 사 기 준
사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li> <li>○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li> </ul>
학술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li> <li>○ 학술·예술·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li> </ul>
공로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li> <li>○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li> </ul>

【별지 제1호 서식】

## 충청북도단체교육상 추천서

○ ○ 부 문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위 사람을            년도 충청북도단체교육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권자(기관명, 직, 성명)

직(사)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조서

○ ○ 부 문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생년월일 :

근 무 처 :

직 위 :

주 소 :

### 1. 학 력

기 간	학 력	비 고

### 2. 경 력

기 간	경 력	비 고

### 3. 실적 및 공적개요

기 간	실 적 및 공 적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조서

○ ○ 부 문

심사위원

\_\_\_\_\_ (인)

\_\_\_\_\_ (인)

대상자명	근 무 처	심 사 의 견	추천순위



(별첨 3)

의안번호	제169-2호
의결 연월일	2004. 8 . . (제 169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4. 8 . 1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2
----------	-------

제출년월일 : 2004. 4.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함  
(안 제26조)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입법예고결과

- 의견내용 :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
- 의견 제출기관 : 충북수영연맹
- 반영여부 : 미반영
- 사 유 : 입법예고안의 수영장 사용료는 전국 수영장의 평균 사용료를 감안하였고,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 사용료 인상 시기(2002년도 인상)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여 미반영함

## 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별표 2의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금액란 다음에 수영장 사용료 징수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수영장	일일회원	초등학생이하	1,500원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 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다이빙장	1일당	10,000원

○ 초등학생이하 : 13세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이상 19세미만과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외부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8호]

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반영여부 통지

- 입법예고법규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04. 5. 21. ~ 2004. 6. 9.
- 입법예고방법 : 도보게재, 홈페이지 탑재, 공문 발송
- 의견 제출 반영사항
  - 의견 제출 기관명 : 충북수영연맹
  - 의견 제출일 : 2004. 6. 9.
  - 의견 반영여부 통지 : 2004. 6. 19.
  - 의견 반영 여부 통지 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의견 반영여부
충북수영연맹	○ 충청북도학생회관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과 동일수준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요청	○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사유 - 입법예고안의 수영장 사용료는 전국 수영장의 평균 사용료를 감안하였고,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 사용료 인상 시기(2002년도 인상)가 도래하였음을 고려하여 미반영함



(별첨 4)

의안번호	제 169-3 호
의결 연월일	2004. 8. . (제 169 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4. 8. 7.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3
----------	-------

제출년월일 : 2004. 8.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함 (안 제17조 제2항)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5조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조례안 : 불 입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 관계법령발췌서 : 불 입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 (생략)</p> <p>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lt;신설&gt;</p>	<p>제4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다만, 학생회 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 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p>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8호]

제135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 1991. 3. 25  
조례 제1888호

개정 2003. 5. 9 조례 제2753호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청·소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는 사무중 제2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169-4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8월 일 (제 169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8월 7 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4
----------	-------

제출년월일 : 2004. 4 .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 일수 축소 조정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안 제5조의2)
- 나.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 근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7조)
- 마.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별표 2)

## □ 개정조례안 : 붙임

##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li> <li>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li> <li>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li> <li>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제12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제12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5조의2 (토요일휴무제및전일근무제) ① 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제15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교육감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토요일휴무제----- ----- -----</p>																																				
<p>제17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7조(연가일수)①-----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 <td>4</td> </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 <td>7</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10</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13</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16</td> </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 <td>19</td> </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 <td>22</td> </tr> <tr> <td>6년이상</td> <td>23</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3</td> </tr> <tr> <td>-----</td> <td>6</td> </tr> <tr> <td>-----</td> <td>9</td> </tr> <tr> <td>-----</td> <td>12</td> </tr> <tr> <td>-----</td> <td>14</td> </tr> <tr> <td>-----</td> <td>17</td> </tr> <tr> <td>-----</td> <td>20</td> </tr> <tr> <td>-----</td> <td>21</td> </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	3																																				
-----	6																																				
-----	9																																				
-----	12																																				
-----	14																																				
-----	17																																				
-----	20																																				
-----	21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출산	-----	3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6786호]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6)

의안번호	제 169-5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8월 일 (제 169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8월 7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169-5
----------	-------

제출년월일 : 2004. 8.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함.(안 제3조)
- 나.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불 입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7)

의안번호	제 169-6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8월 일 (제 169 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8월 7일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6
----------	-------

제출년월일: 2004. 8. 7.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사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2조)

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기타
  -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
2.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제2조제4항중 “위촉위원”을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인	인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10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5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각 국장·공보감·사담담당관·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육정보화과장·기획관리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기획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p> <p>③위촉위원은 교육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기획관리과장</li> <li>2. 교육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지역대표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li> </ol> <p>③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p> <p>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p>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재정법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8)

의안번호	제 169-7 호
의 결 연 월 일	2004년 8월 일 ( 제 169 회 )

200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연 월 일	2004년 8월 7일

# 200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69-7
----------	-------

제출년월일 : 2004. 8.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취득

(단위: m<sup>2</sup>, 천원)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번	수량	추정금액
가 경 초	다목적교실 신축	홍덕구 복대2 2443	1,110	1,060,000
충 일 중	다목적교실 신축	충주시 안림동 1083-4	1,074	980,000
맹 동 초	다목적교실 신축	맹동면 쌍정리 94	846	1,070,000
보 은 중	다목적교실 신축	보은읍 이평리 30-1	942	860,000
청주혜원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상당구 금천동 7-1	846	770,000
청주의국어고	기숙사 신축	홍덕구 복대2 2444	1,420	1,088,000
황 간 고	기숙사 신축	황간면 남성리 431	710	634,000
합 계			6,948	6,462,000

나. 처분

(단위: m<sup>2</sup>, 천원)

기관명	매각 재산명	구분	소재지번	수량	대장금액
괴산 교육청	구어룡초등학교 (폐교)	토지	청천면 도원리 287-1	11,289	83,990
		건물		1,653	299,880
		공작물		36식	12,905
		입목죽		135본	17,550
		계			414,325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토지·건물 취득·처분 위치도 9부.

# 200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7	6,948.00	6,462,000	7	6,948.00	6,462,000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7	6,948.00	6,462,000	7	6,948.00	6,462,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	11,289	83,990	1	11,289	83,990
		건물			1	1,653	299,880	1	1,653	299,880
		기타			1	36식,135본	30,455	1	36식,135본	30,455
	4. 매각	토지			1	11,289	83,990	1	11,289	83,990
		건물			1	1,653	299,880	1	1,653	299,880
		기타			1	36식,135본	30,455	1	36식,135본	30,455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가. 취득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금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번	수 량					
1	가경초	건물	복대2 2443	1,110.00	1,060,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1쪽
2	충일중	건물	충주시 안림동 1083-4	1,074.00	980,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2쪽
3	맹동초	건물	맹동면 쌍정리 94	846.00	1,070,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3쪽
4	보은중	건물	보은읍 이평리 30-1	942.00	860,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4쪽
5	청주 해원학교	건물	금천동7-1	846.00	770,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5쪽
6	청주 외국어고	건물	복대2 2444	1,420.00	1,088,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6쪽
7	황간고	건물	황간면 남성리 431	710.00	634,000	하반기	교육여건개선	교육감	도면7쪽
합 계				6,948.00	6,462,000				

##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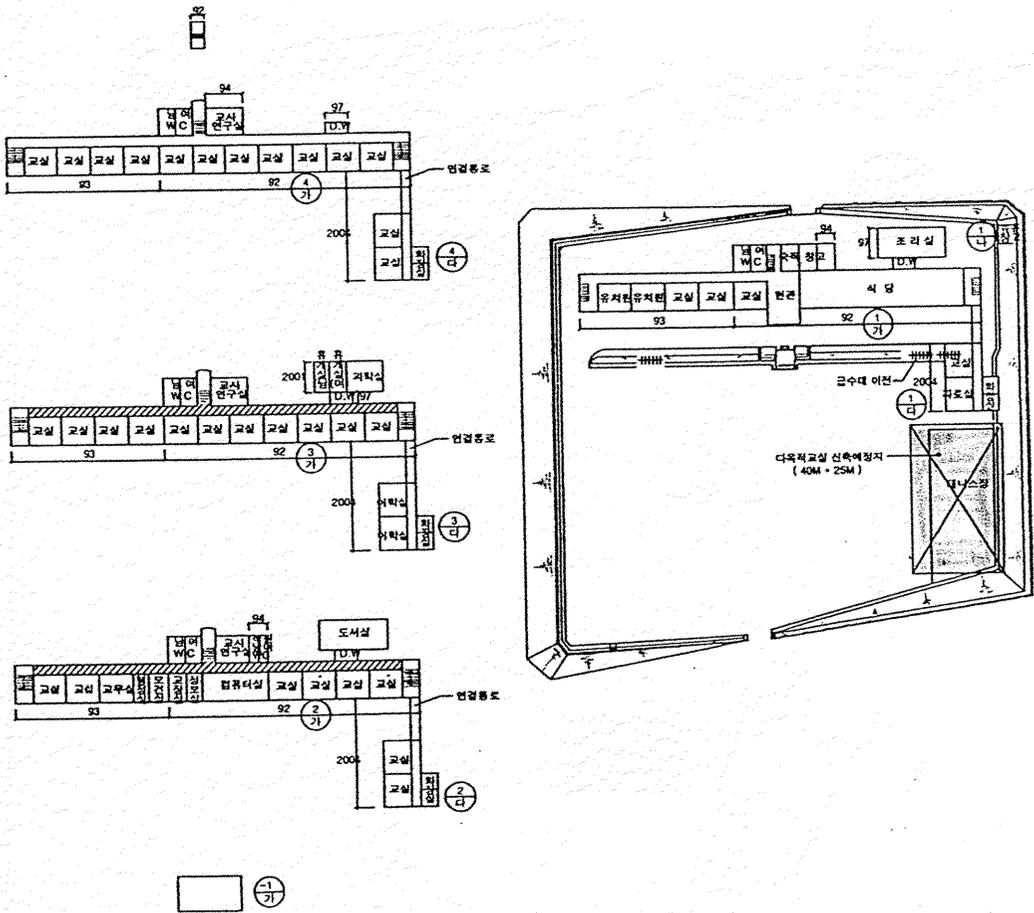
### 나. 처분(매각)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장 금액	처분 시기	처 분 사유	매 입 요청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구어룡 초등학교	토지	청천면 도원리 287-1	11,289	83,990	하반기	0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0 대부자가 없음 0 부족한 교육재정재원 확보 0 학교법인 서울치과 대학원 설립목적 으로 매입요청	최규옥	도면 8쪽
		건물		1,653.00	299,880				도면 9쪽
		공작물		36식	12,905				
		입목죽		135본	17,550				
	합 계				414,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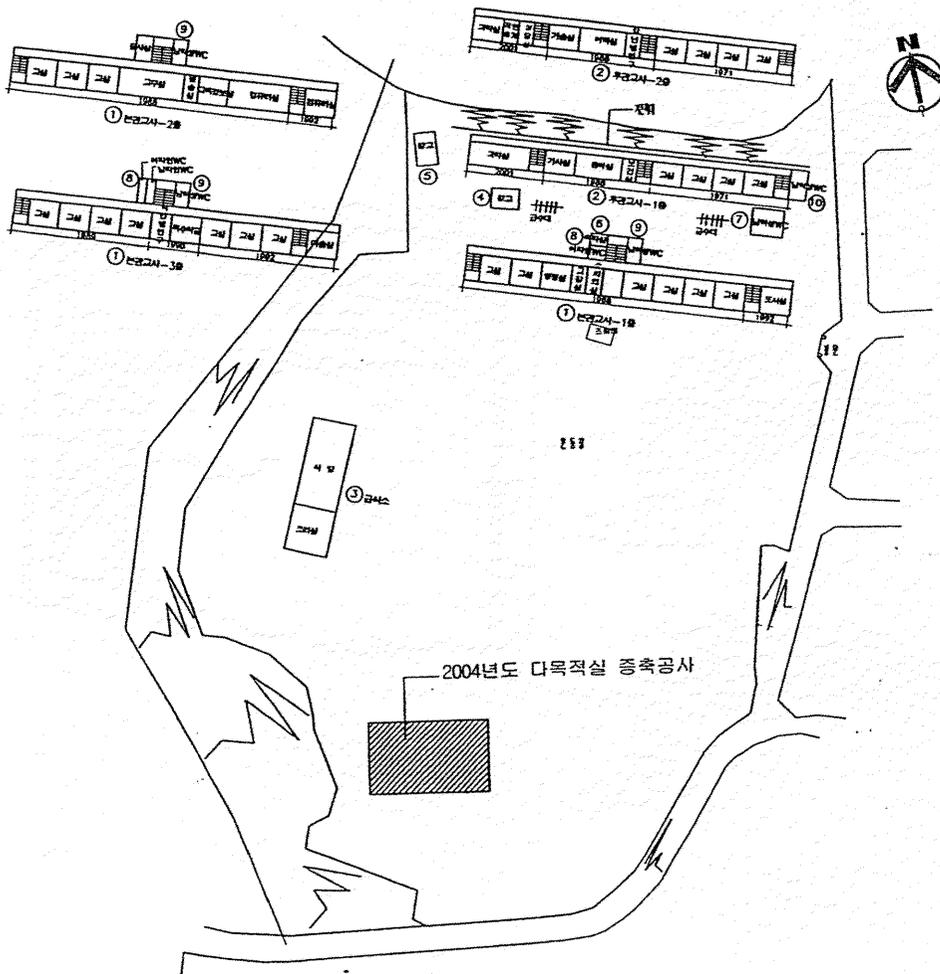
# (1) 가경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m <sup>2</sup>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복대2	2443	철콘슬	1,110	1,060,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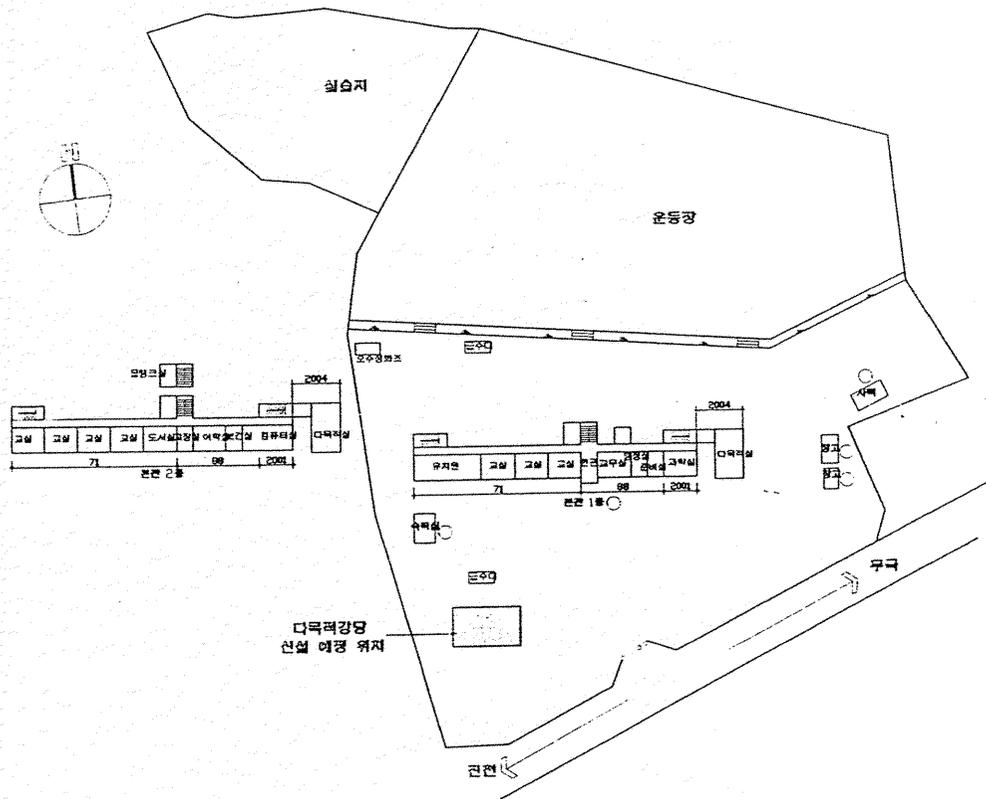
## (2) 충일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충주시 안림동	1083-4	철콘슬	1,074.00	980,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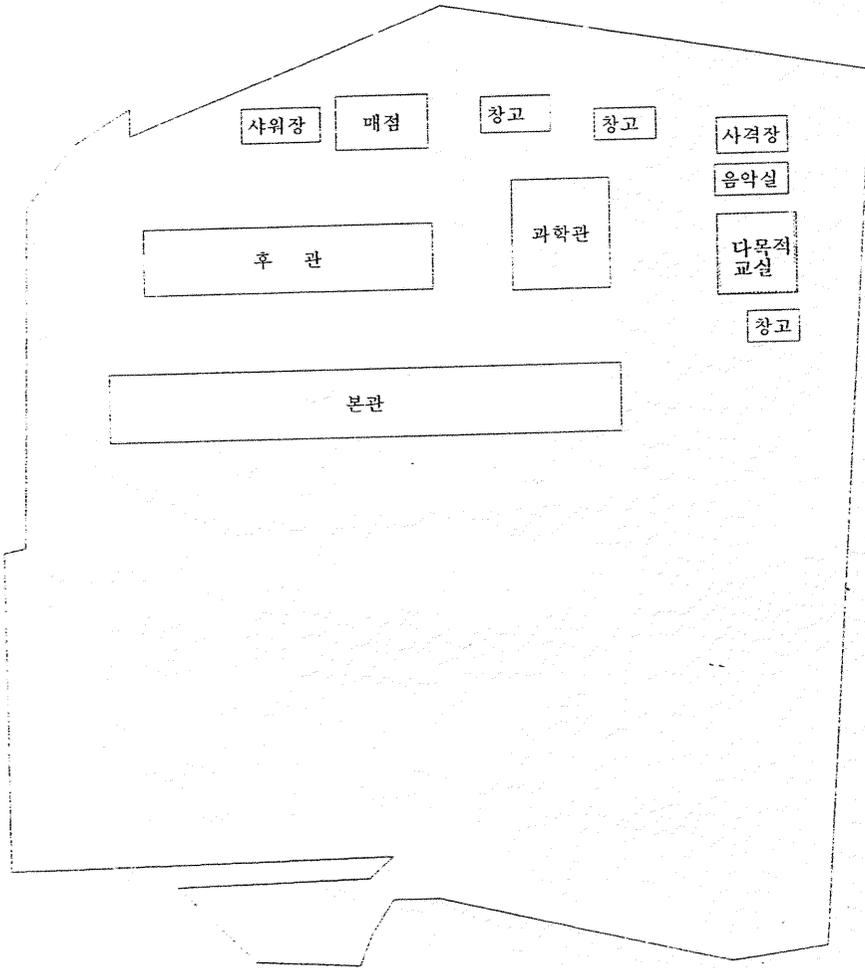
### (3) 맹동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맹동면 쌍정리	94	철콘슬	846	1,070,000	교육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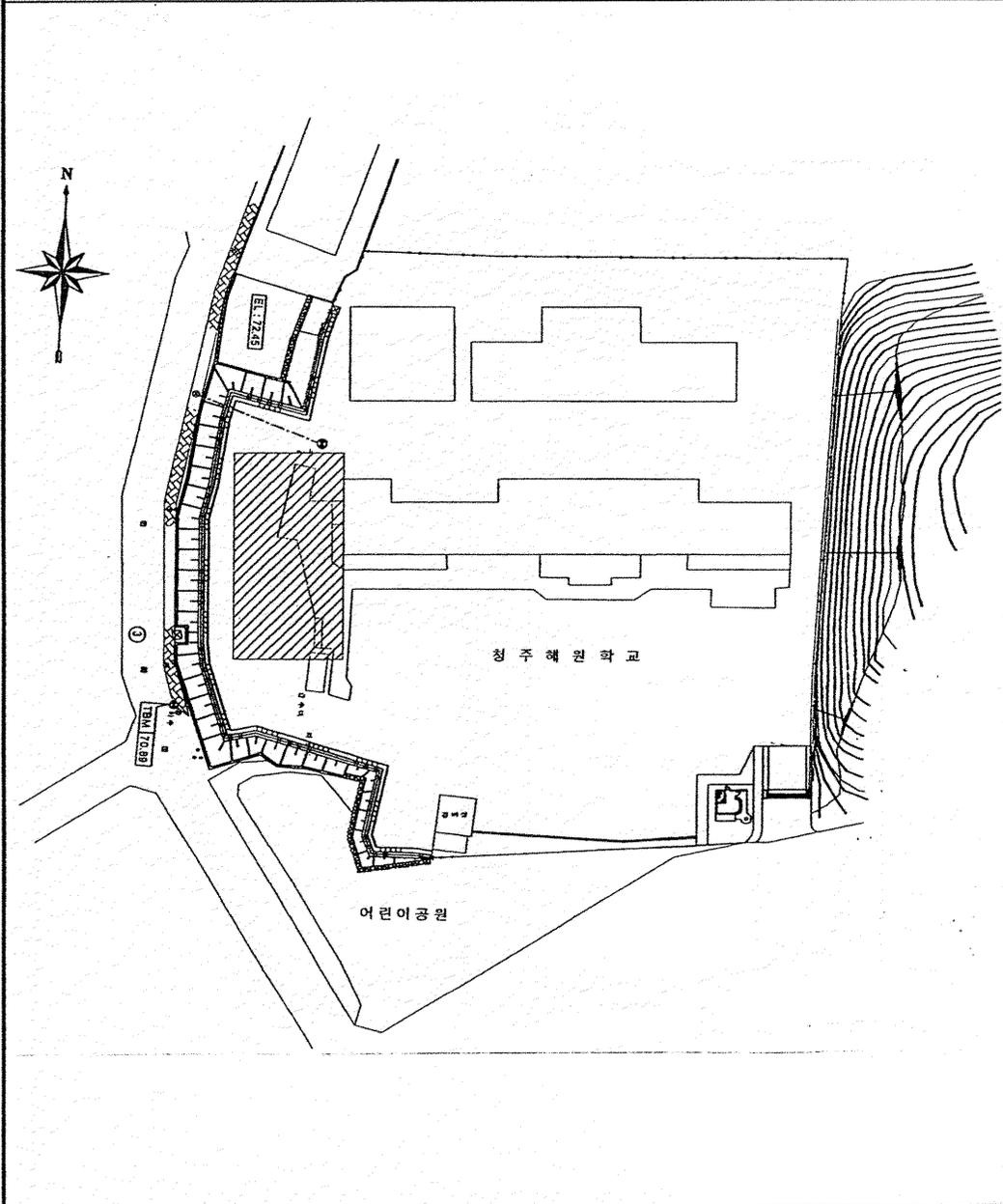
### (4) 보은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보은읍 이평리	30-1	철콘슬	942	860,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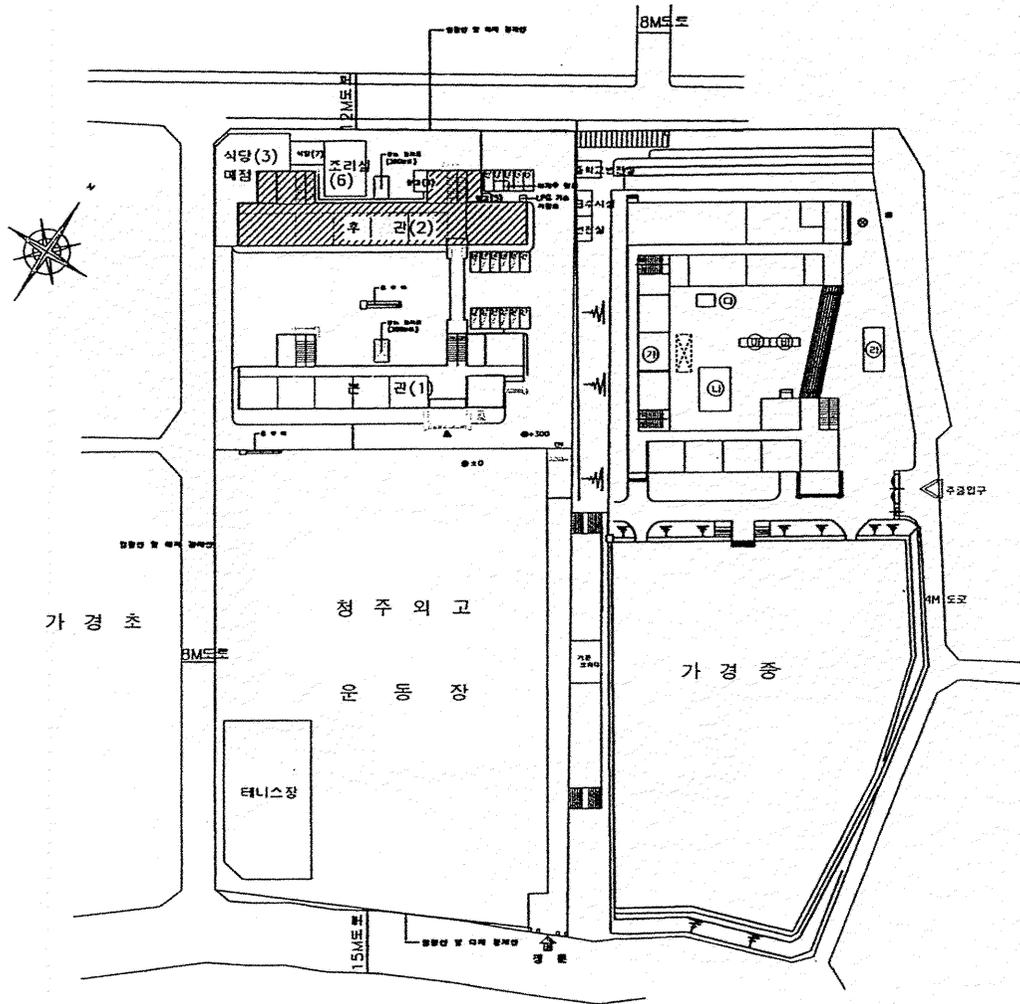
## (5) 청주혜원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금천동	7-1	철콘슬	846.00	770,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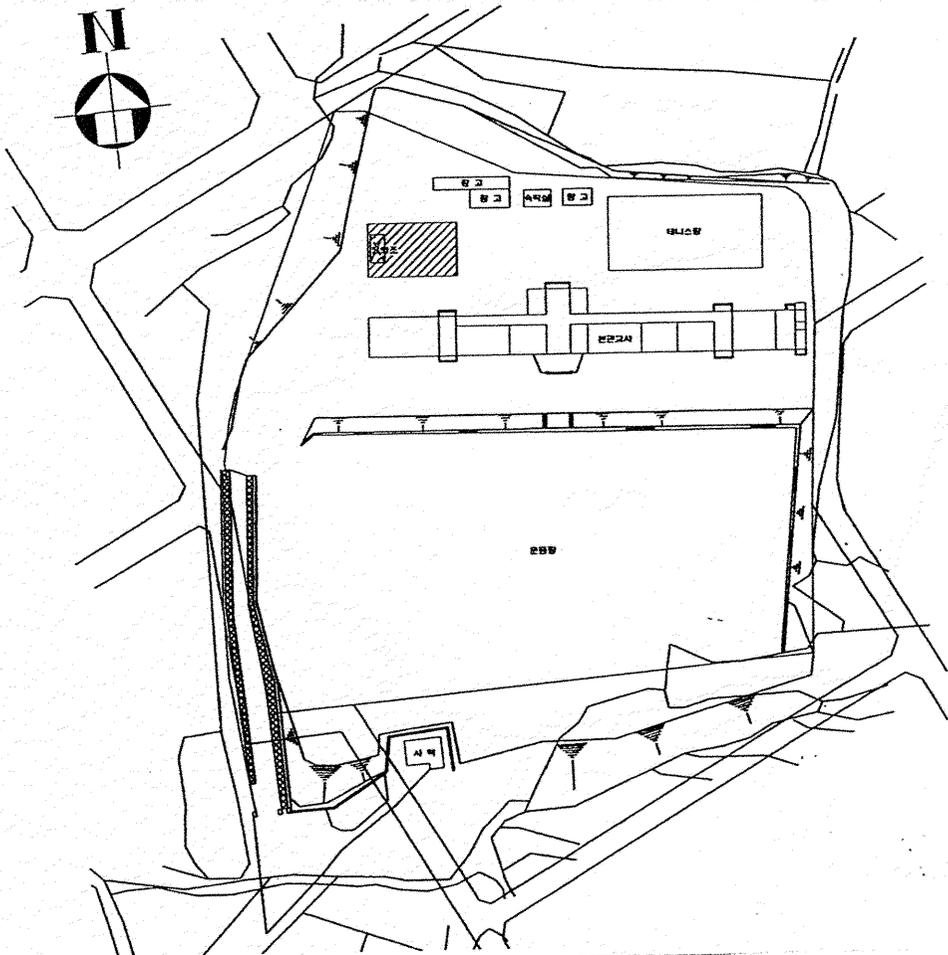
## (6)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신축	복대2	2444	철콘슬	1,420	1,088,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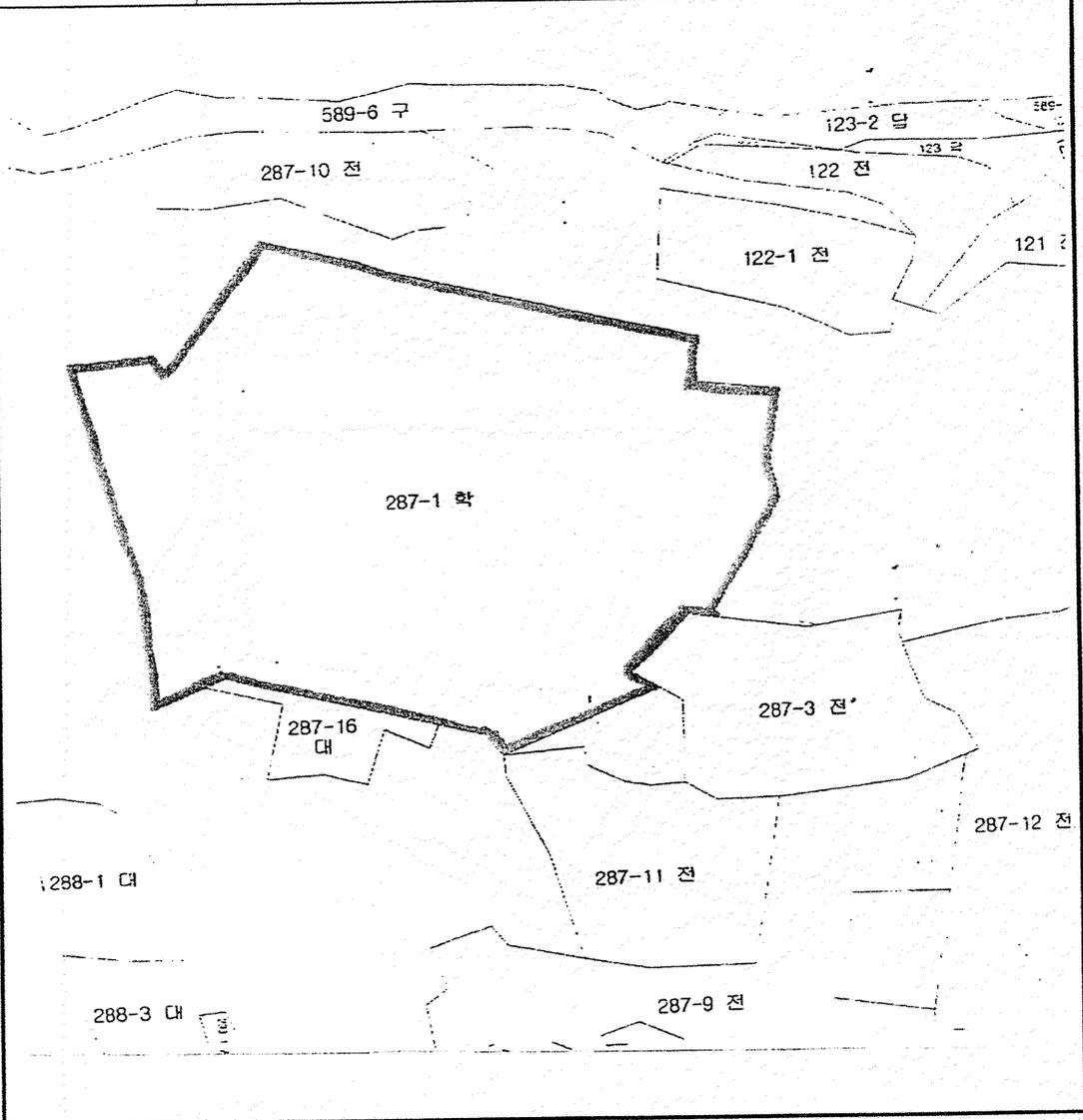
## (7) 황간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신축	황간면 남성리	431	철콘슬	710	634,000	교육여건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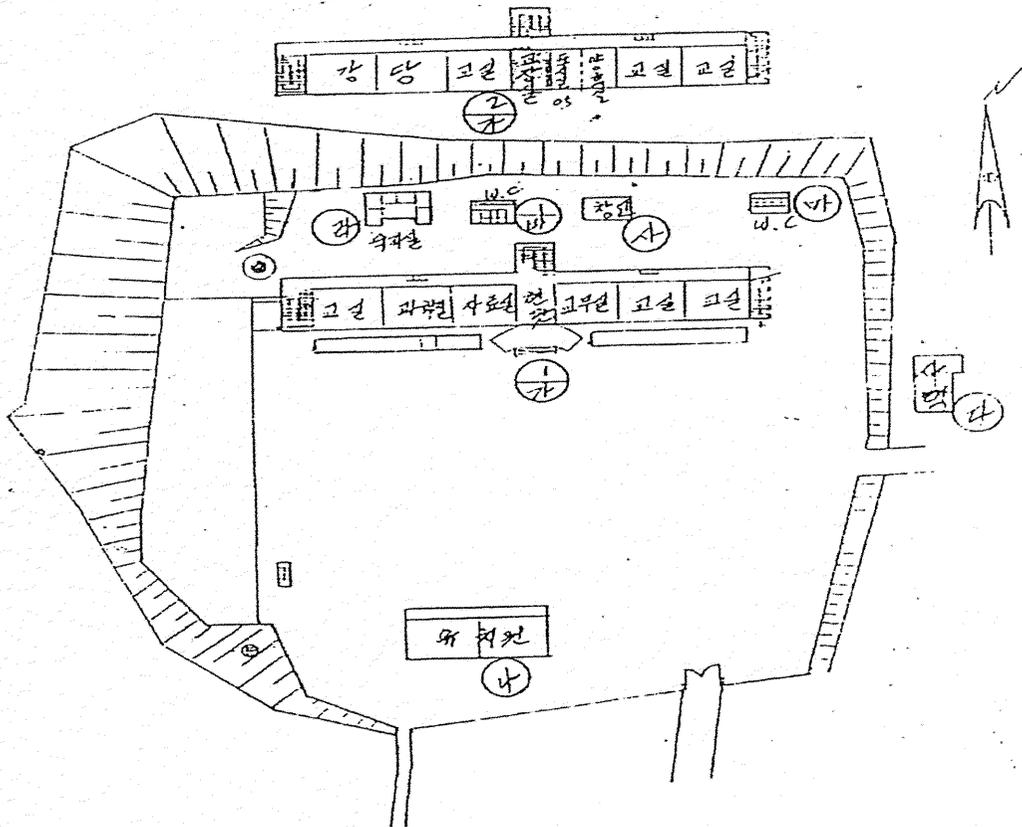
## (8) 구어룡초등학교 토지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대상금액 (천원)	사유
청천면 도원리	287-1	학	11,289	83,990	0 최규옥 매입요청 - 학교법인 서울치과대학원 설립 0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음 0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0 대부자가 없음



## ( 9 ) 구어룡초등학교 건물 처분 위치도

소재지번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 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청천면 도원리 287-1	교사	철콘스	1973	1,316.00	264,899	0 최규옥 매입요청 - 학교법인 서울치과 대학원 설립 0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0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0 대부자가 없음
	교사	시벽스	1967	165.00	4,907	
	숙직실	시벽스	1976	33.00	2,335	
	관사	시벽스	1983	59.00	13,549	
	창고	시벽스	1981	33.00	2,914	
	화장실	시벽스	1973	26.00	1,995	
	변소	시벽스	1984	21.00	9,281	
계				1,653.00	299,880	





(별첨 9)

의안번호	제 169-8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8월 일 (제 169 회)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8월 7 일

##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69-8
----------	-------

제출년월일 : 2004. 4.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1,287억 7,804만 2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209억 3,690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1,497억 1,495만 1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30억 5,245만 1천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9억 3,969만 2천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40억 8,967만 3천원, 주민 등 부담수입 및 기타 3,443만 9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129억 519만 7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9,962만 3천원, 교육행정 45억 9,160만 8천원, 기타경비 33억 4,048만 1천원 계상

예 산 안 : 별 책

사항별 설명서 : 별 책

(별첨 10)

의안번호	제 169-9 호
의 결 연 월 일	2004. 8 . . (제 169 회)

## 2005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4. 8 . 7 .

# 2005학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69-9
----------	-------

제출년월일 : 2004. 8.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사유

- 2005. 3월. 개교예정인 충주 금능초등학교 개교시기 변경

## 2. 주요골자

- 2005. 3월 개교 예정인 충주 금능초등학교 개교시기를 부지매입 지연으로 2006. 3월 개교로 변경하고자 함.

## 3. 학교설립계획 변경

- 개교시기 변경

지역	학 교 명	당초계획	변경계획	변 경 사 유
충 주	금능초등학교	2005. 3. 1	2006. 3. 1	- 토지매입 지연

### ○ 변경사유

-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일원 학교부지 8필지 13,336㎡ 중 4필지 10,911㎡ 매입 완료(82%)하였으나,
- 금능동 산47-21의 3필지 2,425㎡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토지매입 지연

#### 4. 개교지연에 따른 학생수용 대책

중앙초, 칠금초등학교 개교시 까지 학급당 인원 상향편성 운영  
(2005 학급당 편성기준 : 37명)

○ 2005 중앙초등학교 수용계획 [ 1,845명, 48학급(급당평균 38.4명) ]

학교명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중앙초	333	8	41.6	306	8	38.2	296	8	37.0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300	8	37.5	311	8	38.9	299	8	37.4

○ 2005 칠금초등학교 수용계획 [ 1,551명, 42학급(급당평균 36.9명) ]

학교명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칠금초	226	6	37.6	252	7	36.0	288	8	36.0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학생수	학급	평균
	303	8	37.9	223	6	37.2	259	7	37.0



(별첨 11)

젊은교육 희망찬도약

第169回 教育委員會 臨時會

2004. 8. 16.

2002. ~ 2006.

# 中期地方教育財政計劃 修正計劃



忠清北道教育廳

# 목 차

I.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 .....	261
II.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	262
1. 지방교육재정 전망 .....	262
가. 연도별 세입재원 추이 .....	262
나. 연도별 세출추이 .....	263
2. 교육재정 투자방향 .....	264
3. 투자계획 .....	267
4. 사업별·연도별 투자계획 .....	269
가. English Town 건립 .....	274
나.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	275

# I.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개요

## □ 목 적

- 국가 시책사업의 조기 추진
- 지방교육재정 여건 변동에 따른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도모

##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사유

- 2004. 2. 17.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경예산 계상
-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등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

## □ 수정계획 개요

- 2002.~20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 2004년도 계획 일부 수정
- 수정계획 내용
  - English Town 건립 계획 추가
  - 교직원복지회관 건립을 2005년도에서 2004년도로 변경

## Ⅱ. 2002.~200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계획

### 1. 지방 교육재정 전망

#### 가. 연도별 세입재원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비 고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061,077	1,109,606	1,154,483	1,204,703	1,257,759	
국가부담수입	841,996	878,330	916,566	956,948	999,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9,911	742,179	768,940	796,816	825,865	
지방교육양여금	115,221	127,490	138,965	151,471	165,104	
국 고 지 원 금	6,864	8,661	8,661	8,661	8,661	
지방자치단체수입	91,488	93,183	95,216	97,354	99,604	
도 세 전 입 금	7,615	9,188	10,015	10,916	11,898	
지 방 교 육 세	82,548	74,842	75,590	76,346	77,110	
비법정전입금	1,325	9,153	9,611	10,092	10,596	
자체수입	125,969	138,073	142,701	150,401	158,525	
입학금및수업료	36,170	32,091	28,240	30,217	32,332	
재 산 수 입	4,444	5,800	6,265	6,578	6,907	
사용료및수수료	249	165	178	187	196	
잡수입 등 기타	9,367	8,194	8,849	9,292	9,756	
이 월 금	75,739	91,823	99,169	104,127	109,334	
지 방 교 육 채	0	0	0	0	0	
주민(기관)부담수입및기타	1,624	20	0	0	0	

## 나. 연도별 세출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비 고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061,077	1,109,606	1,154,483	1,204,703	1,257,759	
학교교육비	945,099	996,546	1,032,834	1,094,851	1,157,406	
유치원(인건비포함)	21,157	26,379	27,434	28,929	30,580	
초등학교(인건비포함)	417,217	461,197	477,844	505,784	534,706	
중학교(인건비포함)	257,334	244,497	254,306	270,063	285,483	
고등학교(인건비포함)	233,497	246,498	254,557	270,328	285,763	
특수학교(인건비포함)	15,815	17,879	18,594	19,643	20,764	
기타학교(인건비포함)	79	96	99	104	110	
문화 및 평생교육	1,982	3,856	4,010	4,184	4,435	
교육행정	63,725	75,283	83,694	82,208	87,140	
교육위원회 (인건비포함)	908	1,218	1,266	1,329	1,408	
선 거 관 리	156	191	0	0	230	
교육청(인건비포함)	48,097	52,656	54,762	57,500	60,722	
교육청시설	2,604	3,252	3,382	3,551	3,764	
교육지원기관운영 (인건비포함)	10,532	12,314	12,806	13,446	14,252	
교육지원기관시설	1,428	5,652	11,478	6,382	6,764	
기타경비	50,271	33,921	33,945	23,460	8,778	
지방채 상환	18,177	21,209	28,172	17,436	2,489	
제 지 출 금	0	8	0	0	0	
예 비 비	32,094	12,704	5,773	6,024	6,289	

## 2. 교육재정투자방향

### 가. 학생 소질개발 및 영재교육 기반 구축

-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
- 영재학생의 조기발굴 및 육성
- 학교 특성을 살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어학실 설치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 제고
-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 지원
- 지역균형을 위한 시범교육청 운영
- **English Town** 건립
  - 학생들과 원어민이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어의 사소통 능력 신장과 국제문화 이해
  - 무분별한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등의 사교육 수요 흡수

### 나.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
- ICT 활용 교육 지원
- 민간개발 교육용 S/W 보급
-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교수-학습자료 활용
- 학생 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
-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지원
- 전산보조원 각급 학교 배치 임용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

**다.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
- 학교과학관운영 지원
-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

**라. 유아교육 공교육기반 조성**

- 유치원 종일반운영 지원
-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 단설 유치원 설립

**마. 학생 교육복지 증진**

- 학생 중식 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 학교 급식 운영
- 교과서 무상지원
-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운영
- Bio 교육문화회관 건립
-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

**바. 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

- 학교 체육활동 지원
- 각종 체육대회 지원
- 학교 순회코치 임용

## 사.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 교원 전문성 신장과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 실시
-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 재해보상 급여 및 대여장학금 사업으로 공무원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

## 아. 교육환경조성 및 여건 개선

- 교단선진화 사업 지속 추진
-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교육환경개선 사업
-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 녹색학교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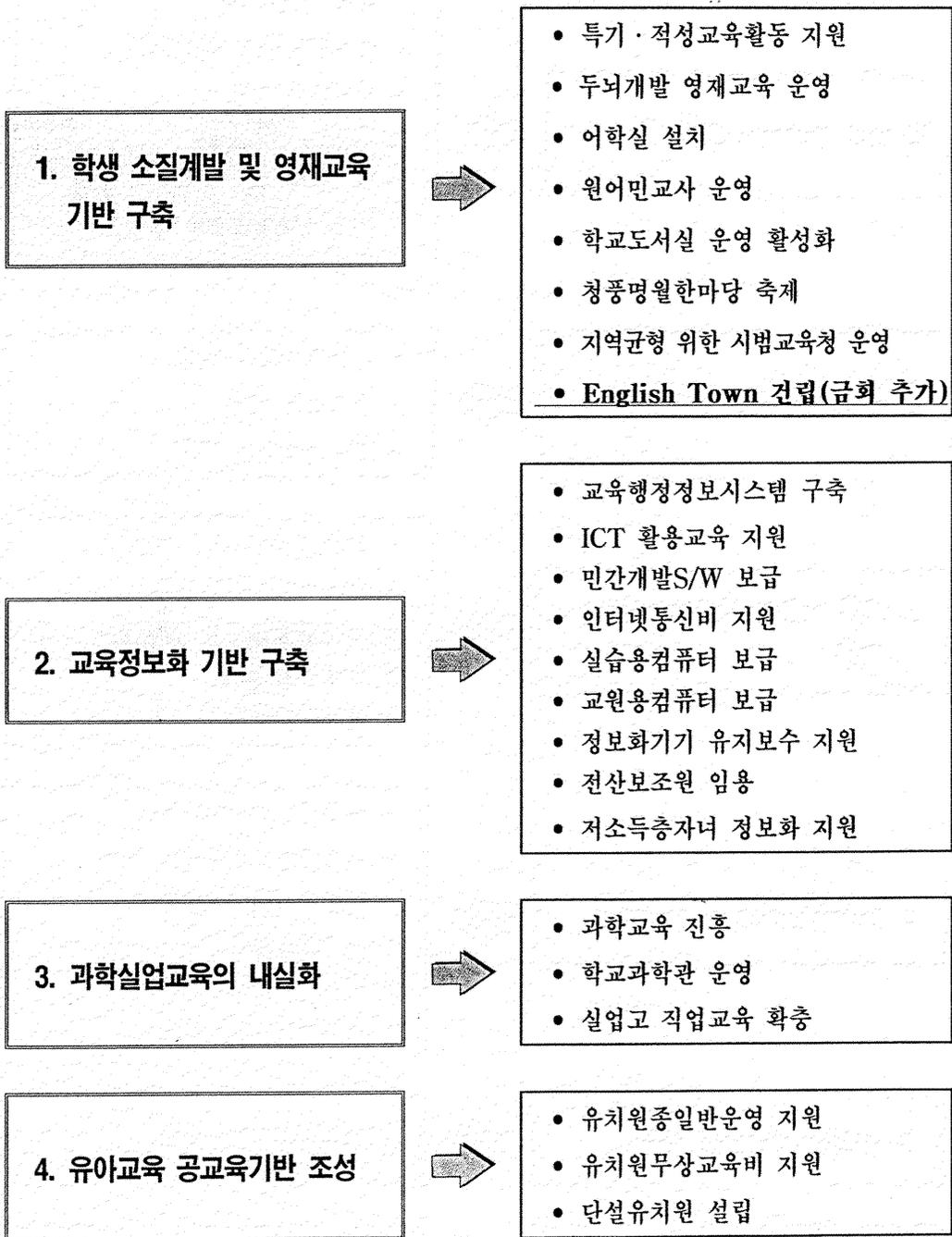
## 자. 건설한 사학육성 지원

- 공·사립학교간 균등한 교육여건 유지
-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액을 지원하여 교육정상화에 기여

## 차. 건전 교육재정 운영

- 교원명예퇴직수당, 학교신설, 학교통·폐합에 따른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적기 상환으로 건전 교육재정 운영
- 연차별 국고지원 계획에 따라 전액 국고에서 상환

### 3. 투자계획



5. 학생 교육복지 증진

- 학생 중식 지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 학교급식 운영
- 교과서 무상지원
-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운영
- Bio 교육문화회관 건립
- 산업체특별학급 운영

6. 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

- 각종체육대회 지원
- 순회코치 임용
- 학교체육활동 지원

7.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 교과 전문인 양성 연수
- 교원사무보조원 임용
-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 재해보상 급여
- 대여장학금 지원

8. 교육환경조성 및 여건개선

- 교단선진화 지속 추진
-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추진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교육환경개선사업
- 제7차교육과정시설확충
- 녹색학교 조성 사업

9. 건실한 사학육성 지원

- 사립학교 재정 지원

10. 건전 교육재정 운영

- 지방채 상환

#### 4. 사업별·연도별 투자계획

##### □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번	분 야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비고
		2002.	2003.	2004.	2005.	2006.		
1	학생소질계발 및 영재교육 기반구축	5,837	15,403	13,634	12,736	11,943	59,553	
2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10,461	10,228	12,245	19,813	24,518	77,265	
3	과학·실교육의 내실화	6,783	11,274	9,381	13,552	9,781	50,771	
4	유아교육 공교육기반 조성	1,976	3,990	3,189	7,725	21,374	38,254	
5	학생 교육복지 증진	24,828	27,895	43,225	32,174	34,027	162,149	
6	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	2,611	2,947	3,470	3,577	3,744	16,349	
7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6,936	7,574	10,279	9,137	9,743	43,669	
8	교육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210,673	141,519	128,032	247,875	238,524	966,623	
9	건실한 사학육성 지원	67,211	77,208	82,749	87,675	92,919	407,762	
10	건전 교육재정 운영	17,663	23,761	28,172	17,436	2,489	89,521	
계		354,979	321,799	334,376	451,700	449,062	1,911,916	

### 가. 학생 소질개발 및 영재교육 기반구축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1-1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3,995	4,181	4,873	5,533	5,533	24,115
1-2	두뇌개발 영재교육 운영	59	350	544	643	650	2,246
1-3	어학실 설치	270	880	900	1,080	1,080	4,210
1-4	원어민교사 운영	296	450	1,069	1,000	1,000	3,815
1-5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588	8,821	2,852	2,942	2,942	18,145
1-6	청풍명월 한마당축제	179	271	288	288	288	1,314
1-7	지역균형을 위한 시범교육청 운영	450	450	430	450	450	2,230
1-8	English Town 건립			2,678	800		3,478
계		5,837	15,403	13,634	12,736	11,943	59,553

### 나.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515	587	520	566	623	4,811
2-2	ICT활용 교육 지원	291	295	255	255	255	1,351
2-3	민간개발 S/W 보급	722	967	964	964	964	4,581
2-4	인터넷통신비 지원	1,054	1,181	1,611	2,299	2,299	8,444
2-5	실습용컴퓨터 보급	2,909	3,073	5,326	5,548	10,413	27,269
2-6	교원용컴퓨터 보급	331	288	353	5,102	4,442	10,516
2-7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지원	548	557	561	674	786	3,126
2-8	전산보조원 임용	911	1,969	1,516	2,600	2,730	9,726
2-9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1,180	1,311	1,139	1,805	2,006	7,441
계		10,461	10,228	12,245	19,813	24,518	77,265

### 다.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5.	2006.	
3-1	과학교육 진흥	100	2,314	2,852	6,762	2,844	14,872
3-2	학교과학관 운영	390	2,062	441	445	450	3,788
3-3	실업고 직업교육확충	6,293	6,898	6,088	6,345	6,487	32,111
계		6,783	11,274	9,381	13,552	9,781	50,771

### 라. 유아교육 공교육기반 조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5.	2006.	
4-1	유치원종일반 운영 지원	420	781	1,224	1,815	2,088	6,328
4-2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556	1,272	1,965	5,126	8,796	17,715
4-3	단설유치원 설립	1,000	1,937	0	784	10,490	14,211
계		1,976	3,990	3,189	7,725	21,374	38,254

### 마. 학생 교육복지 증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5.	2006.	
5-1	학생 중식 지원	5,170	5,566	5,823	6,166	6,475	29,200
5-2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9,299	6,151	7,151	9,299	9,299	41,199
5-3	학교급식 운영	3,958	3,890	6,353	7,424	7,913	29,538
5-4	교과서 무상지원	4,659	6,579	6,528	7,371	8,227	33,364
5-5	통·폐합학교 통학버스 운영	1,149	1,291	1,571	1,597	1,777	7,385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5-6	교육문화회관 건립	0	4,000	15,500	0	0	19,500
5-7	산업체특별학급 운영	593	418	299	317	336	1,963
계		24,828	27,895	43,225	32,174	34,027	162,149

### 바. 학교 체육활동 육성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6-1	학교체육활동 지원	757	748	749	785	823	3,862
6-2	각종체육대회 지원	902	938	1,217	1,271	1,316	5,644
6-3	학교순회코치 임용	952	1,261	1,504	1,521	1,605	6,843
계		2,611	2,947	3,470	3,577	3,744	16,349

### 사.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7-1	교과 전문인 양성 연수	1,286	1,729	2,159	2,663	2,963	10,800
7-2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1,950			1,950
7-3	교원사무조보원 임용	1,176	2,227	3,126	3,430	3,736	13,695
7-4	재해보상 급여	1,430	1,145	1,166	1,166	1,166	6,073
7-5	대여장학금 지원	3,044	2,473	1,878	1,878	1,878	11,151
계		6,936	7,574	10,279	9,137	9,743	43,669

### 아. 교육환경 조성 및 여건 개선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8-1	교단선진화 지속 추진	4,113	3,864	3,200	3,353	3,452	17,982
8-2	교육행정업무전산화 지속 추진	367	1,142	301	331	387	2,528
8-3	학급당 학생수 감축	119,922	56,811	62,874	185,278	177,473	602,358
8-4	교육환경개선사업	67,263	61,148	45,275	58,463	56,762	288,911
8-5	제7차 교육과정시설 확충	19,008	18,244	15,932	0	0	53,184
8-6	녹색학교 조성사업	0	310	450	450	450	1,660
계		210,673	141,519	128,032	247,875	238,524	966,623

### 자. 건설한 사학육성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9-1	사립학교 재정지원	67,211	77,208	82,749	87,675	92,919	407,762
계		67,211	77,208	82,749	87,675	92,919	407,762

### 차. 건전 교육재정 운영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10-1	지방채 상환	17,663	23,761	28,172	17,436	2,489	89,521
계		17,663	23,761	28,172	17,436	2,489	89,521

# 1-8. English Town 건립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생들과 원어민이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국제문화 이해
  - 무분별한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등의 사교육 수요 흡수
- 총 사업비 : 2002~2006년(3,478백만원)
- 건립개요
  - 위치 : 친천군 문백면 은탄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내
  - 건축규모 : 2,460㎡(745평, 지상 3층)
  - 주요시설 : 강의실, 어학실, 교무실, 영상학습실, 휴게실, 화장실, 자료실
  - 소요예산 : 2,677,691천원(설계비, 건축비, 부대비)
- 운영계획
  - 소집단 편성·운영으로 24시간 영어사용 중심의 체험학습 유도
  - 원어민과 공동생활로 영어사용권 국가문화 이해
  - 초·중학생 및 영재반,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구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2.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분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English Town 건립	물량				1식	부대시설		
	투자 금액	국고						
		지방비			2,678	800		3,478
		계			2,678	800		3,478

## 3. 사업효과

-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 사교육비 경감
- 학생 외국어 능력신장 배양

## 7-2.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직원들의 연찬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휴양시설 확충
- 총사업비 : 2002~2006년(1,950백만원)
- 시설규모 및 활용방안
  - 위 치 : 충주시 종민동 530-31 (구)성남초 종인분교장
  - 시설규모 : 1,219㎡(369평)
  - 활용방안
    - 교직원 복지 및 휴양시설
    - 교직원 연수
    - 교직원 문화공간
    - 교직원 동호회, 교과연구회, 세미나 등 회의장소
    - 각종 시험 출제장소 등

### 2.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실적기간		기준연도	계획기간		합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투자 금액	국 고			1,950			1,950
		지방비						0
		계			1,950			1,950

### 3. 사업효과

-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여건 조성
-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



(별첨 12)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함.(안 제3조)

○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일·숙직수당 책정 방법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하여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

조례 제정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입법의 필요성, 적합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음.

## 6. 심사결과 : 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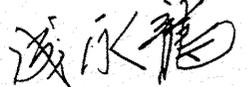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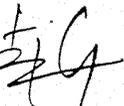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3)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진원)

가. 개정이유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육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9~15인으로 하고, 위원 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단재교육상을 시상함에 있어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상부문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 및 심사위원수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유치원 교육이 누락되어 조문 내용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와 제3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초·중등” 앞에 “유 - 가운데 점(·)” 을 삽입하고, 또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의 심사위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 에서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 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6. 수정안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 내용 표현의 명확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초·중등의 “초·중등” 앞에 “유- 가운데 점(·)” 을 삽입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
- 심사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 에서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5조제2항)

-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로 함.(안 제5조제3항)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단재교육상 시상부문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것은 그 기본 정신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학생부문이 삭제되어서는 안되며, 이전에 교육위원회의 부결사유였기에 충북학생상 시상을 폐지했다고 해서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과.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사유가 모든 학생상을 한데 묶어 단재교육상에 버금가는 '새로운 학생상 시상 계획을 추진하려 함'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8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단체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 내용 표현의 명확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 초·중등의 “초·중등” 앞에 “유- 가운데 점(·)” 을 삽입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
- 심사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 에서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5조제2항)
-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로 함.(안 제5조제3항)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의 “초·중등” 앞에 “유·가운데 점(·)” 을 삽입한다.
- 안 제3조제1항 및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초·중등” 앞에 “유·가운데 점(·)” 을 삽입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 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 시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수상대상자) ①교육상의 수상대상 자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전에 기 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사도부문 : 충청북도 초·중등 전·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p> <p>2. 학술부문 : 충청북도 초·중등 전· 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p> <p>3. (생략)</p> <p>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 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학예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제1조(목적) ..... 유·초·중등</p> <p>.....</p> <p>.....</p> <p>.....</p> <p>.....</p> <p>제3조(수상대상자) ①.....</p> <p>..... 유·초·중등.....</p> <p>.....</p> <p>.....</p> <p>1. .... 유·초·중등 ....</p> <p>.....</p> <p>2. .... 유·초·중등 ....</p> <p>.....</p> <p>.....</p> <p>3. (원안과 같음)</p> <p>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원안과 같음)</p> <p>②..... 13인</p> <p>.....</p> <p>③.....</p> <p>.....</p> <p>.....</p> <p>..... 임명하되,</p> <p>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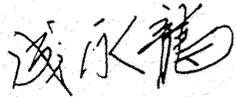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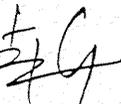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4)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개정이유

-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함(안 제26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전환하여, 관리운영주체가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제명은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함으로, 그 적용대상과 내용을 함축성 있게 하고, 조문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중 “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로 하고, 별표 2의 “일일회원”을 “일일입장”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6.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과 내용을 함축성 있게 하고, 조문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 및징수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일일회원”을 “일일입장”으로 함.(별표 2)

##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8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과 내용을 예견하여 함축성 있게 하고, 조문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정수등에관한조례” 로 제명을 변경함.
- “일일회원”을 “일일입장”으로 함.(별표 2)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중 “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를 “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로 한다.
- 별표 2의 “일일회원” 을 “일일입장”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명)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u>사용</u>에관한조례</p> <p>제26조(사용료) 별표2</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일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월    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체입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다이빙장</td> </tr> </tbody> </table>	사용구분		수영장	일일회원	월    회원	단체입장	다이빙장	<p>(제명) .....<u>사용및징수등</u>.....</p> <p>제26조(사용료) 별표2</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용구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영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일입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사용구분		수영장	일일입장	.....	.....	.....
사용구분															
수영장	일일회원														
	월    회원														
	단체입장														
	다이빙장														
사용구분															
수영장	일일입장														
	.....														
	.....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원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5)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김전원)

가. 개정이유

-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함 (안 제 17조 제2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영장이 실내수영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영장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영장 관리 운영 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경되는 대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2항 중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6.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변경되는 대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으로 함.(안 제17조 제2항)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8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변경되는 대상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 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으로 함.(안 제17조제2항)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7조제2항 중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 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7조(설치) ① (생략)</p> <p>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u>다만</u>, 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p>	<p>제17조(설치)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 단 .....</p> <p><u>수영장은</u> .....</p> <p>.....</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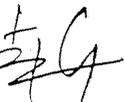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6)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개정이유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 일수 축소 조정 및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신설(안 제5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안 제12조)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전일 근무제 폐지(안 제15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안 제17조)
-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확대 조정(별표 2)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및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고,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항·호 상호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2의 제2호 내지 제4호 중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 6. 수정안 주요내용

### 가.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항·호 상호간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함.(안 제5조의2, 제2호 내지 제4호)

##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 8. 소수의견 주요내용

신설하는 비밀엄수 의무 강화 조항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내 부고발 및 도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하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노·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점 등으로 미루어 시·도간 통일된 안이 나올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8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항·호 상호간의 용어와 형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골자

○ “있는 경우” 를 “있는 사항”으로 함.(안 제5조의2의 제2호 내지 제4호)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의2의 제2호 내지 제4호 중 “있는 경우” 를 “있는 사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생략)</p> <p>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u>경우</u></p> <p>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u>경우</u></p> <p>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u>경우</u></p>	<p>제5조의2(비밀엄수).....</p> <p>.....</p> <p>.....</p> <p>.....</p> <p>1. (원안과 같음)</p> <p>2. ....</p> <p>.....</p> <p>..... <u>사항</u></p> <p>3. ....</p> <p>..... <u>사항</u></p> <p>4. ....</p> <p>..... <u>사항</u></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원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7)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4년 8월 17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개정이유

-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사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교육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 제고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위원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사 5명을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내용이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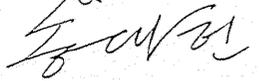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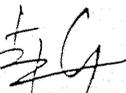
김남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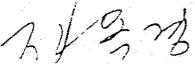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별첨 18)  
(제169회 임시회)

# 심 사 보 고 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8월 16일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4년 8월 16일)
  - 제2차 소위원회(2004년 8월 19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28,778,042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20,936,909천 원이 증액된 1,149,714,951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23,052,45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939,692천원, 기타수입 34,439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089,673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12,905,197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99,623천원, 교육행정 4,591,608천원, 기타경비로 3,340,481천원을 계상하였음.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128,778,042천원보다 20,936,909천원이 증가한 1,149,714,951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149,714,951	1,128,778,042	20,936,909	1.9%증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23,052,451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939,692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089,673천원,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34,43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991,649	90.7
	지방교육양여금	0	0.0
	국고지원금	4,060,802	19.4
	소 계	23,052,451	110.1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848,192	4.0
	비법정전입금	1,091,500	5.2
	소 계	1,939,692	9.2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1,396,804	6.7
	입학금 및 수업료	0	0.0
	사용료 및 수수료	0	0.0
	잡수입	1,237,352	5.9
	이월금	△6,723,829	△32.1
	소 계	△4,089,673	△19.5
주민(기관등)부담수입및기타	주민부담금	0	0.0
	기타지원금	34,439	0.2
	소 계	34,439	0.2
합	계	20,936,909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12,905,197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99,623천원, 교육행정 4,591,608천원, 기타경비로 3,340,48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	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95,761		0.5	
		초등학교	475,849		2.3	
		중학교	3,144,288		15.0	
		고등학교	6,360,656		30.4	
		특수학교	2,808,298		13.4	
		기타학교	20,345		0.1	
		소계	12,905,197		61.6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99,623		0.5	
		소계	99,623		0.5	
급여·복지		급여관리	0		0.0	
		복지·후생	0		0.0	
		소계	0		0.0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0		0.0	
		교육청	1,212,917		5.8	
		지역교육청	612,000		2.9	
		교육지원기관	2,766,691		13.2	
		소계	4,591,608		21.9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6,179,226		29.5	
		예비비	△2,838,745		△13.6	
		소계	3,340,481		16.0	
합	계		20,936,909		100.0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유아교육진흥 139,000천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환경개선(9개원) 124,000천원
  - 단설유치원 학급증설 교재·교구구입(1개원) 15,000천원
- 특수교육 진흥 2,131,240천원
  -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등 151,240천원
  -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추진(2교) 1,950,000천원
  -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시범학교운영(3교) 30,000천원
- 학교체육 활성화 1,288,284천원

· 체육고 지원(1교)	110,794천원
· 지정종목육성교 장비 지원	150,490천원
· 전국체육대회 지원	355,000천원
· 운동부 휴게시설 및 훈련장	672,000천원
○ 학교도서관 도서 확충	350,000천원
○ 공교육 정상화	3,673,841천원
·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	274,750천원
·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400,000천원
· 수준별수업 강화	55,000천원
· 「English Town」 건립(학생종합수련원)	2,677,691천원
· e-Learning 시범학교 운영(3교)	30,000천원
· 인터넷원격강의시스템 설치	100,000천원
· 교실수업도약 체험 연수	136,400천원
○ 대안교육의 내실화	20,000천원
○ 과학교육의 내실화	545,000천원
· 발명공작실 특색프로그램 개발(11교)	55,000천원
· 지역산업체 등 체험학습장 조성	260,000천원
· 탐구·체험학습 지원	200,000천원
· 탐구·과학 장학자료	30,000천원
○ 실업교육의 내실화	3,771,149천원
· 산학연계 및 학교기업연구시범학교 운영(2교)	20,000천원
· 실고생 장학금 지원	679,121천원
· 실습기자재 확충(32교)	930,224천원
· 첨단학과개편 기자재 지원(6교)	686,957천원
· 특성화고 신설기자재 지원(5교)	615,714천원
· 직업교육과정 운영교 지원(4교)	10,200천원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3교)	810,715천원
· 실업계고 전문교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18,218천원
○ 교육정보화 지원	294,075천원
· 교육정보화 활성화 추진단 운영	13,675천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280,400천원
○ 단재기념관 설치	90,000천원
○ 교직원의 사기진작	270,000천원
· 공동사택 신축	270,000천원
○ 교직원합창단 운영	25,750천원
○ 교육환경개선	1,046,204천원
· 의벽보수 및 벽체단열(2교)	127,200천원
· 바닥보수(1교)	35,860천원

· 화장실 확충(3교)	508,300천원
· 천장보수(1교)	54,400천원
· 부대시설	320,444천원
○ 일반시설	8,276,960천원
· 다목적교실(5교)	4,740,000천원
· 다목적실(2교)	465,800천원
· 다목적교실 보수(5교)	854,660천원
· 기숙사 증축(2교)	1,722,000천원
· 부대시설	494,500천원
○ 학교급식운영의 충실	709,539천원
· 급식소 시설(1교)	230,000천원
· 급식소 개·보수(1교)	74,100천원
· 급식기구(12교)	371,000천원
· 학생중식지원	34,439천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53,471천원
· 폭설피해가구 학비지원	26,160천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27,311천원
○ 평생교육 운영	99,623천원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30,000천원
· 수영장 운영	61,123천원
· 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8,500천원
○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	6,179,226천원
○ 교육재산 관리(사유지 매입 1교)	71,400천원

나. 삭감내역

삭감액 : 21,210천원

삭감내역 및 사유

○ 혁신분권팀 운영 21,210천원

총무과 소관 혁신분권팀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71,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21,210  
천원을 감액함.

다. 종합의견

금번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에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  
입,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등의 재원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유아·특수교육진흥  
등 학력제고 사업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교육복지 증진사업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

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  
져야 할 것이며.
- 예산편성 및 배분에 있어서도 학교간·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목적에 맞는 재정투자 균형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 외 자체 지원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시  
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8. 20.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무과 소관 혁신분권팀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7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정  
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21,210천원을 감  
액함.

다.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교육청운영(세항)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천원중 84천원을 감액함.
  - 자산취득비 60,200천원중 17,920천원을 감액함.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교육청부서운영(세항)
  - 기본행정사무용품비 3,000천원중 1,050천원을 감액함.
  - 특근매식비 1,800천원중 630천원을 감액함.
  - 국내여비 4,360천원중 1,526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12,622,851천원을 12,644,061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대성여중 다목적교실 보수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낡은 건물로 안전진단 등을 위하여  
보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8월 20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무과 소관 혁신분권팀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71,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21,21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교육청운영(세항)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천원중 84천원을 감액함.
  - 자산취득비 60,200천원중 17,920천원을 감액함.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교육청부서운영(세항)
  - 기본행정사무용품비 3,000천원중 1,050천원을 감액함.
  - 특근매식비 1,800천원중 630천원을 감액함.
  - 국내여비 4,360천원중 1,526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12,622,851천원을 12,644,061천원으로 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운영 세항)교육청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0천원중 84천원과, 자산취득비 60,200천원중 17,920천원을 감액한다.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항)교육청운영 세항)교육청부서운영

기본행정사무용품비 3,000천원중 1,050천원과, 특근매식비 1,800천원중 630천원, 국내여비 4,360천원중 1,526천원을 감액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예비비 12,622,851천원을 21,210천원 증액한 12,644,061천원으로 한다.

2004년도제2회총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세출>

(단위:천원)

과 목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 의결		예산액	수정내역
장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4. 교육행정				37,429,106	21,210		37,407,896	
3. 교육청				17,222,555	21,210		17,201,345	
1. 교육청운영				16,469,855	21,210		16,448,645	
01. 교육청운영				1,431,198	18,004		1,413,194	○ p89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감 △84 (240 → 156) 자산취득비 감 △17,920 (60,200 → 42,280)
44. 교육청부서운영				704,014	3,206		700,808	○ p89 기본행정사무용품비 감 △1,050 (3,000 → 1,950) 특근매식비 감 △630 (1,800 → 1,170) 국내여비 감 △1,526 (4,360 → 2,834)
5.기타경비				38,532,422		21,210	38,553,632	
3.예비비				12,622,851		21,210	12,644,061	
1.예비비				12,622,851		21,210	12,644,061	
01.예비비				12,622,851		21,210	12,644,061	○ 예비비 21,210
합 계				1,149,714,951	21,210	21,210	1,149,714,951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4. 8. 20.

예산·결산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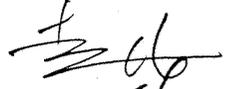
위원장

송대현



간사

이기수



위원

고규강



김남훈



성영용



진옥경





第16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33
I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37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40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6일 (월요일) 11시 39분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9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은 고규강 위원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조례심사위원장에 고규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죠.

고규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고규강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규강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42분)

● 위원장 고규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송대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대헌

요번 조례안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고규강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조례가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43분)

● 위원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8월 17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7일 (화요일) 10시 01분

##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 위원장 고규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

오늘 심사해 주실 조례안은 모두 6건으

로 주관 과별 조례안이 상호연관된 내용

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관과

별로 일괄상정 및 일괄심사 하되 의결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잠시 정회하여 협의시간을 가진 후 최종 처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

### ● 위원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단재교육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중등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등교육과장 연준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항상 충청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 단재교육상 시상부분의 교원, 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단재교육상조례를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둘째,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단재교육상 시상부분의 교원·일반부문과 학생부문 중 학생교육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부문을 삭제하며 셋째, 안 제4조 제1항에 수상대상자의 추천권자를 교장, 고등학교장, 본청 국장에서 직속기관장을 추가하고 넷째,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9 내지 15인으로 하고 위원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가 있는 위원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기수 위원

순서대로 안해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 ● 위원장 고규강

그렇죠.

● 이기수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심사위원수를 15인에서 9인 내지 15인으로 사람을 줄였어요.

근데 심사위원은 심사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되도록 많을수록 이게 공정하거든요. 너무 적다든지 하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얘기인데 그 줄인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연준

지금 9인에서 15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공정한 심사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 그런 판단이 서서 여유를 줬 주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여유인데 이걸 9인으로 줄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장님 단재교육상조례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전 3대 교육위원회, 2대 교육위원회에서 두 번씩 보류하고 거부당한 이유를 아셔야 될 겁니다.

뭐냐하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때 거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그렇게 보기도 안 되겠지만 어느 경우는 교육감이 주고 싶은 사람 주는 얘기 아니냐 심사위원 문제

때문에 두 번 다 보류된 얘기에요.

그러면 첫째, 15인인데 아무래도 9인이라고 하고서 거기 말입니다. 또 한가지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감소속의 공무원하고 덕망있는 인사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 9인을 가지고서 덕망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교육감소속의 인원을 몇 명이라고 제한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한 8인이나 7인 정도를 교육감소속에 있는 공무원을 거기다 넣었을 경우는 교육감 의도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 두 번 보류될 때가 심사위원 중에서는 교육위원도 집어넣고 누가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 갖고 두 번 보류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한테는 복수로 추천했기 때문에 교육감이 둘 중에서 하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하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갖고서 여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9인 내지 15인이라면 9인으로 했을 때도 합법적인 얘기고, 거기다 8인 이상 교육감소속이하 공무원들을 제한규정이 없다고 하든지 하면 7인이나 이렇게 넣어 갖고 누구 줘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얘기입

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조례에는 교육상수상대상자 추천인원을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면 인원이 3명도 될 수 있고 8명이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9명 그래서 그걸 최소한의 인원을 잡기 위해서 9명 내지 15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15인으로 하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교육청에서 적정인원을 가지고 심사하는 그런 얘기가 나를 올 것 같아서 외부인사를 넣게 하기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감소속은 교육감이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흐를까봐서 최소한의 인정을 선정하고 최대 인원은 종래와 같이 15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9인하고 15인은 상당한 인원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12인 이상이라든지 13인 이상 15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폭을 15인에 가까울 정도의 폭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된다면 됩니까? 15인인데 거기서 6명까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큰 폭을 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든지 하면 그걸 13인 이상 15인 이하든지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중에서는 교육감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몇인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적에 소위원장한테 거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회의진행이 두 분이 주고받는 회의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것이 충청북도교육청소속공무원을 몇 명으로 하고 교육·학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몇 명 이렇게 인원을 배분 내지는 제한을 해주면 더 분명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가 교육감이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늘리고 외부인사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명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생길 염려도 있고 그래서 안했는데

그것이 제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분명히 삽입시키고 인원 폭을 하한선을 9인 오히려 보강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을 폭넓게 15인 중에서 여섯 사람이라는 얘기는 3분의 1 이 넘는 그런 신축성을 주시지 마시고 13인 이상 15인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히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어떻게 본다면 아 전인수격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단재교육상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있는 상인데 집행청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일곱 교육위원 중에서 한사람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배정해 주는 것도 양기관이 같이 협조해 갖고서 상을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위촉위원을 누구로 한다는 것을

여기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종래에 했던 것보다는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도의회 교사위원 중에 한 분 이렇게 명시하기는 좀 어려워서 폭을 넓혀서 학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이렇게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지난 이제까지의 단재교육상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양하게 위원이 위촉되어서 심사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재교육상이 거부되고 보류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 갖고 얘기가 됐던 거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를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상에 대한 권위도 서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송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간사 송대헌**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내부적인 것 제 의견을 말씀  
을 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 제1조의 목적  
하고 제3조 수상대상자 위촉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이 목적에  
도 이 조례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  
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이렇게 했는데 지  
금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이 마당에서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초·중등이라고 하  
는 유치원을 하나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  
이고, 제3조에 수상대상자에도 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초·중등 교육발  
전에 기여하는 했는데 유·초·중등이라  
는 유치원을 하나 삽입하는 것 그 밑에  
1,2,3항 유자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같  
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종래의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와 이래서 외부인사 충북교육발전에 기여  
하신 분들이 충북교육발전이라는 충북교  
육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  
에 그것을 폭을 좁히느라고 초·중등 교  
육발전 이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

는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유  
치원교육에서 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안  
계셔서 그걸 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법  
률에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기본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초·중등  
이라 그래서 그렇게 명시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유·초·중등 이렇게 할 수  
도 있을텐데요.

● **간사 송대헌**

국장님 교육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  
니고 우리 충청북도단재교육상입니다. 충  
청북도교육을 위해서 초등교사나 유치원  
교사나 대학은 배제된 것으로 압니다. 중  
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또 일반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헌한 자는 다 포함되  
어야 되는데 교육법을 토대로 해서 초·  
중등이라고 묶어 있다고 해서 단재교육상  
에 유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  
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내용 중에 유치원  
을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또  
이제까지 초·중등교육법에 기초해서 된  
그런 내용 중에 우리가 유치원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내용 가지고 그것이 다 수용 포괄된 의미  
가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유자를 더 넣

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간사 송대현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수용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제5조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러면 임명되는 날 매년 시상되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당해연도로 한다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가 다릅니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당해연도라고 그러면 연도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시상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대개는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종료되는 시점이 11월에 될 수 있고 12월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당해연도라고 그러면 2000년도 단재교육상 심사위원 일정년도 전체를 포함해서 하기가 좀 의미가 산만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시적인 분들이 위촉할 때 그때부터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대개 그렇게 되어서 일반적인 통례를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 간사 송대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재교육상이라고 하는 큰상을 주는 제도가 되어서 위원이 위촉됐다면 공정하고 9인 내지 15인이든 간에 위촉됐다면, 꼭 당해연도로 매년 위촉하고 당해연도로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임기는 2년으로 해서 나중에 비면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보충해서 결원을 위원을 위촉하고 빈자리만 위촉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 그런 쪽에 회의가 가서 묻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당해연도마다 단재교육상 위원을 위촉하고 또 끝나면 또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2년이라든가 3년의 위원의 임기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타당한 사람을 지난해 했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후보자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본 위원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또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간여유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심사를 할 때 공정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을 꼭 보안에 부쳐 가지고 비밀에 부쳐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공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당해연도 그때그때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간사 송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위원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줄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15인에서 9 내지 15로 변경된 것은 명백히 줄은 것이죠. 인원삭감에 결정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9 내지 15로 15를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되풀이되는 말씀 같은데 원래 있던 제5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개정한 것도 15인 이내인데 다만 9인 이상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종래의 15인 이내라고 그러면 이내의 의미가 1명부터 15인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인원을 9인으로 정했습니다. 15인은 같은데 그때 그 9인의 의미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 물론 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9인으로 했습니다만 적다 그러면 9인을 조금 늘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소인원을 너무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13인 이상 15인이라면 그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느라고 줄여왔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단체교육상조례에 교육상을 시상하시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제까지는 심사위원을 몇 분 두셨습니까?

● **위원장 고규강**

종래에 두었던 인원 금년도에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심사위원회 위촉을 안했습니다. 지난해 것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작년도에 십 몇인 것 같은데 제가 참석해 보니까 많던데

●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자료가 금방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처음에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학생을 교육의 중요한 주체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학생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이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내부에서 이야기들도 났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것을 학생부문을 삭제하신 것인지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단재교육상의 무게라고 그럴까 비중 내

지 권위 이거에 비추면 학생들도 단재교육상을 주어서 상의 권위를 높여 주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일반인 또는 교사와 함께 학생을 표창함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상은 교육활동의 결과, 교육내용의 결과 저희 초·중등교육을 하면서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키워주는 과정에서 익혀진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 우리교육의 일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이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다른 일반적인 모범학생이나 또는 다른 학생과 함께 상을 포함해서 시상하는 것이 이거 이외에도 학생 시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시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요. 제가 좀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살아오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결코 그 분이 당대에 그분의 일생동안에 성공하시고 명예와 부를 누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굉장하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을때 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 위주로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살아오신 과정이나 이런 것들과도 매우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비중을 두고 상을 주는 것을 구태여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그와 관련해서 내부 논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텐데 학생은 따로 다른데 가서 상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교육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대상인 학생들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그러니까 구태여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를까 있던 것에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더 저를 설득을 해보시죠.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단재교육상의 학생부문과 관련됐던 부문의 상을 주지 않고 그거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권위라고 그럴까 이런 상의 무게 이런 것을 저희가 깎아 내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학생과 관련된 상은 별도의 시상

관련 된 계획이나 기준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못지않는 상을 시상하는 것이 저희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별도로 했는데, 그 내용은 종래의 단재교육상조례 속에 있던 학생부문을 충북학생상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큰상을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이 조례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그 상을 주려면 단재교육상에서 빼던가 아니면 그쪽 상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던가 하는 그런 제안말씀이 계셔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 충북학생상이라는 시상제도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다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를수 있는 종래의 모범학생표창, 충북학생상 그리고 충북학생효도대상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시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못지 않은 무게 있는 그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일단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제외되기를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해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학생들이 이 상을 자세히 좀 안다면 글썩요. 어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한테 보면 심사위원자격을 충청북도교육청소속 교직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심사위원 구성비율이 여기서 어느 분야에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구성비율을 정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 드릴 말씀은 지난해에는 심사위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심사위원 구성비율에 본청 직원의 심사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과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단재교육상 심사위원으로 모두 15분 중에서 10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본청에 10분과 외부인사 3분해서 모두 13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13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 현장 일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초등에 한 분, 중등에 한 분해서 외부에서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13분이 되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구성비율이 본청이 10명 그 다음 외부인사가 3명해서 10대 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부인사의 의견과 관계없이 심사위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본청 주관대로 수상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도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심사위원 구성비율을 본청 직원을 대폭 줄이고 글자 그대로 투명하게 심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제안말씀해 주신 심사위원 구성비율을 본청 직원과 외부인사와의 관계를 2

분의 1정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관해서 우선 입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또는 그런 내용같은 것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아 가지고 그분들을 더 많이 넣었던 것은 아니고 종래의 규정에 의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이 공정성이나 또는 편중되지 않는 심사를 위해서는 일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원조정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다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명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하면 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변경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인원구성비율을 명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분의 1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감하시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전원

예.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육·학에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청 국·과장님이 주로 심사위원이 됐을텐데 그분들의 이런 분야를 갖다가 제가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명확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8조2항하고 3항에 부상하고 실비변제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쪽 다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주지 못합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단재교육상 부상으로 주는 예산을 매년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합니다. 책정하는

것이 대개 대상 받으신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의 부상으로 상금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산 그 액수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상의 부상의 액수를 높여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상황이 불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꼭 여기다 결부시킬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줬을 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느냐 안해 주시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범위라고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성영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부상에 관한 부분은 어떤 돈보다도 부상보다도 단재교육상을 탔다는 긍지감이지 돈 바라고 이거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해 두고 물론 종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부상을 더 줘야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조례의 변화가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당과 여비도 마찬가지로인데 위원들간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이래 해 주셔야지 이것 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기준을 여기 조례에다가 해놨다가 그 이듬해 가서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래야 될 그런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하기 편리하다는 것보다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예산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성영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3조에 유치원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인원을 9인에서 15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많게 해야되지 않느냐 너무 제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성영용 위원님께서 부상과 수당과 여비에 액수를 거기다가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훈 위원님께서서는 9인에서 15인 이내로 했을 적에 위촉위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여기 물어보면 교육청소속 공무원을 2분의 1이하로 한다 든가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조례 밑에 하위법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다가 부상은 또는 실비조례를 다시 지금 바꾸려고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쫓는데 일관성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래서 실비변상조례를 일관성 있게 다시 만들든 다음 거기에 입각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촉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다 정회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국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의사진행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지금 논의 됐던 사항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물론 거기 유치원을 넣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첫째, 공정성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수를 확대해 갖고서 13인에서 15인이라든지 이

렇게 하는 문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본청 직원을 제한을 하는 조항인데 그건 또 구체적인 안으로써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는 말씀을 김남훈 위원이 하셔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간담회에서 결정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서 넘어갈 것인지.....

● 위원장 고규강

간담회에서 하기로 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촉위원에 관한 문제와 또는 위원회인원수는 요건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41분)

● 위원장 고규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교육기관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본 도에서 열림에 따라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을 확대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청주농고에 있는 실외수영장을 약 65억원의 예산을 양여 받아서 건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이 9월 초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영장을 유료화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영장사용료 징수기준을 일일입장료, 월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여 초등학생이하, 중·고등학교학생 그다음에 일반인들로 징수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고결과 충북수영연맹에서 수영장사용료 및 강습료를 청주문화예술체육관의 수영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수영장을 징수를 할 때는 전국의 수영장 그 다음에 충청북도수영장 그 다음에 청주문화예술체육관보다는 수영장사용료가 좀 높습니다. 높은 것이 인상시기

가 도래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에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됐단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안 부의안건 3안에 대해서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던 실외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보수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관리하기가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 9월부터 4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으로 개장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청주농고에서 관리운영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수영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충청북도학생회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생회관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 외에 수영장이 소재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를 추가코자 합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를 입법예고결과 이거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증개정조례안 이랬는데 사용에 관한 조례  
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방자  
치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조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127조는 사용료고 130  
조는 사용료의 징수조례 그래서 지방자치  
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조례를 명확  
하게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사용료징수조례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수영장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인  
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수영장운영을 하  
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 주시  
고, 여기에 관해 부속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 있는 수영장운영이라고  
하면 최상의 서비스와 편의를 이용객들에  
게 제공하면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운영  
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것을 충족시켜  
야 됩니다.

지금 관리비도 없이 봉사한다고 치면은  
중앙에서 돈을 얻어다가 계속 받는 것밖  
에 안됩니다.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  
로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아서 가능한지  
판단해보셨는지 이 부분은 같이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130조 지방자치법 요거에 관한  
의견은 제가 지금 검토를 다 못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운영에 관계되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영장운영을  
사회봉사에 사회에 기여에 관한 걸 목적  
으로 두냐 경쟁력에 관계되는 걸 목적으  
로 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를 수영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전 문화회관이니 각  
도의 시도교육청의 소속 수영장이 있는  
것을 다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간에게 대여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  
로 할 것이냐 조사를 이렇게 한 결과 이  
게 민간에게만 대여를 해주면 잘못하면  
경쟁력만 되다보면 지금 주성대학이 체육  
회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에 연간 월 500만원씩 연간 6,000만원을 내고 하는데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체육회관에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쪽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만약에 이 수영장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도 연간 약 9억원의 예산소요가 된대요.

근데 각 시도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만약에 민간에게만 대행해 준다면 또 영리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수영장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고 또 공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예산의 손실이 많고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절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9억 정도의 운영비가 안나오는데 보통 타 시도의 예를 보니까 4,5년 정도 되면 인건비는 국가에서 하더라도 운영료하고 어느 정도 맞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의 운영사용료 요 문제 문화예술회관수영장과 우리 이거와의 가격 관계는 있다 조금 가격이 어떻다면은 물가도 오르고 이런 걸 요거는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 **성영용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인건비를 제외한 9억원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운영비가 든다고 적자라기보다는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요.

● **성영용 위원**

운영비가 들게 되면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용잡부도 써야될 테고 수돗물이라든지 약품비, 관리비 감각삼각은 안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저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억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그러면 학생과 구분해서 방학기간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와야 유지되는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타산관계도 해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타산을 이렇게 생각하면 체육회관 것을 제가 몇 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약 1,000명 정도의 25m레인인데도 1,000

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여튼 500명 이상 이거는 50m레인이기 때문에 규모도 체육회관에 비해서 수영장의 크기가 배나 되죠. 이걸 50m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이 길이가 수영장이 보통 25m레인과 50m레인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까지만 되면 500명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월회원이 근데 대개가 월회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부탁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계속 자금을 넣지 않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청주문화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과 동일한 기준으로다가 요금을 징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물가상승요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예술체육회관의 수영장사용료는 어린이 기준해서 얼마 정도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지금 초등학생이 1,200원이고 1일 중·고등학교가 1,700원, 일반이 2,300원인데 우리가 새로 학생회관수영장은 1,5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사용료가 다른 공공기관의 수영장사용료보다 우리가 비싼 거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주성대학수영장, 곰돌이수영장, 한빛코아수영장보다는 우리가 낮은데 그 다음에 청주실내수영장보다는 우리가 높습니다.

● **김남훈 위원**

타 시도는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거기보다는 우리는 중간치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타 시도의 중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높고 그래서 현재 물가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실내수영장과 똑같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관한 통계잡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지금 드려도 될까요?

● 김남훈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운영하는 것 같이 너무 사용료가 싸면 쌀수록 좋은 이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농고안에 설치됐던 야외수영장을 전국제전을 충북에서 개최함으로써 결국 실내수영장으로써 우리가 증축을 해 갖고서 실내수영장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인원들을 그러면 학생회관으로 직원을 이관시킵니까? 관리이전 하

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학생회관에서 방금 3안이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학생회관의 소재지를 그러니까 청주시 영동의 기준에 있는 것하다가 청주농고까지 그 부분까지도 학생회관에 포함을 시켜서 1개과를 하나 만들어서 예정은 관리과를 만들어서 학생회관 산하에 관리과 과장이 그걸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인원이 지금 현재 야외수영장으로 있을 때 관리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내수영장으로 났을 때 인원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가 학교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져 불합리하고 그래서 학생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관련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마는, 그걸 운영하려면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일용직도 써야 되고 관리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 업무가 학생회관으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의 부서가 설정되게 됩니다. 그 부서를 명칭을 관리과라고 명칭을 했는데 관리과에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무관으

로 하고 그 밑에 일반직도 넣고 그 다음에 일용직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정원과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책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요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정규직원 즉 지금 예를 들면 안전요원하고 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어야 되고 법규정에 그 다음에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이 2명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난방요원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3교대로 해야 되고 7분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일용잡부 그 다음에 강사요원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15,6명 그 다음에 또 관리하는 입장료관리라든가 요거 19명으로.....

● 이기수 위원

현재 인원은 관리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농고수영장이었을 때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3명이 있었는데.....

● 위원장 고규강

회의가 좀 손을 들고서 답변·질의해줘야 되는데 제가 분명하게 위원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네 반드시 거수를 해 가

지고 위원장이 얘기했을 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편의상에 같은 얘기로 중복이 되어서 얘기될 때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승인 얻은 것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자꾸 하든지 하면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까 하든지 하면 이게 좀 회의진행상 매끄럽지 못하니까.....

● 위원장 고규강

답변하시는 건, 예 말씀하세요.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고수영장으로 관리됐을 때 학생들한테 징수금액은 얼마였었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청주농고에서 관리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사용료를 받았었습니다. 그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서 자료를 찾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청주농고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쪽으로 완전히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4명이 현재 거기 발령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공사를 위해서 가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은 현재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일 때는 500원, 대학생과 일반인은 2,000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청주농고에서 관리할 때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건표를 본다면 상당히 여러 군데의 수영장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참고로 했고 또 청주시내에 있는 다른 수영장에 대한 금액도 참고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농고에 있는 수영장은 학생들을 위한 휴식시설 아니면 체육시설로써 목적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실내수영장으로 바뀐 걸로 해 갖고서 이 금액을 1,000원에서 1,500원 올렸다는 얘기는 50% 올린 얘기에요. 이게 50%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갖고서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교육예산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그쪽에 더 지원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1,000원 했던 수영장이 지붕 세웠다고 해 갖고

1,500원으로 한다면 학생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수영장목적은 학생을 위해 갖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지 교육이라는 건 꼭 돈 갖고만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걸 학생 그냥 1,000원 받던지 1,200원, 1,300원을 받던지 해야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지붕세우고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입장료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이상 인상이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앞으로 경영하고 3인에서 15인 12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난방문제 이런 재정적인 소요가 증액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달리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학생에 대한 입장료는 과다하게 오른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대헌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그마한 것 용어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징수조례표에 보면 일일회원, 월회원, 단체입장, 다이빙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회원이나 월회원이나 단체

입장이나 다이빙장이나 한번 티켓을 사면 하루종일 쓰는 것이죠.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갔다가 또 밖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회에 그치는 겁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일일회원이니까 하루종일 쓰는 겁니다. 나갔다 왔다하는 겁니다.

● 간사 송대헌

그래서 여쭙 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거기 월회원이라는 설명은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그래서 한달내 수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일회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선납한 회원이라기보다는 일일입장이 문맥의 체계로 봐서 일일입장, 월회원, 단체입장, 다이빙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충청북도학생회관에서 강당도 있고 또 내외시설들이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혹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설립될 수영장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입장료 받는 곳은 수영장에 한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전에 이야기도 있으셨지만 집 가까운데에 체육시설이 많아지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체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를 따져 보셨겠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역에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파격적인 그런 사용료를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아까도 몇 번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에서 가격같은 것은 저 개인 과장으로서는 절충을 해도 적절한 합리점을 위원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당초에 예고할 때만 해도 1,2개월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도 경제적인 지역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 농고안에 수영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입구는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시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입니다.

출입구가 완전히 후문에 내덕동 진천서 오다보면 MBC로 가는 바로 그 옆에 커브머리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리라기보다 청주농고가 실습지농장이거든요. 농장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호수도 이렇게 건설해 가지고 외곽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방학 때 이런 때는 괜찮겠지만 강화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학생들이 드나들고 또 농고학생들이 실습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게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고있는 쪽하고는 약간의 경계를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인들과 접촉하는 도로부분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건 현재 추세가 울타리 다 없애기 운동도 하고 녹지가꾸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이 과거에 담장에 이렇게 쳐있었는데

보기흉하다 차라리 그냥 약간의 경계석정도만 두고 이렇게 오픈해 주는 것이 동네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동네 인근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고에 물 이렇게 저수하던 거를 연못을 조성해 가지고 벤치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배려를 저희들이 했고 조금 전에 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써도 학생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받고 일반인한테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마는 거기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보다 많이는 못받더라도 적정하게 평균선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새롭게 시설을 단장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용객들이 좀 있을 것이다 다른데 보다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들 청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고의 부속시설을 다른 곳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농고 교장선생님께 혹시 부담이 되거나 그

런 중첩되는 관리의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의 관리나 혹은 이런 것들도 완전히 학생회관으로 그냥 이첩이 되는지 또 부담은 부담대로 안고 수익은 학생회관 쪽에서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는 않을지 이제까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조성할 적에 매년 농고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지 있는 쪽에 경계를 해달라는 것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의견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연못 조성하는데 연못에 있는 물을 퍼 가지고 실습지에다가 물을 주고 하는 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이 잘 나오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다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농고에 부대시설도 많은데 다른 학교와는 좀 달리 관리상의 이것들이 경계석정도만 놔뒀을 때 교장선생님은 부담을 느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교장선생님께서 또 다른 부담이 계시다면 교장선생님의견 존중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농고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수영장 그쪽으로 잔디조성을 해 가지고 관련되는 새로운 신설학과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교장선생님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으면 매점을 운영하거든요. 지금도 매점운영하고 있었나요?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신가?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수영장을 가던지 그런 규모의 수영장이라고 그러면 휴게실에 수영용품을 파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 매점은 앞으로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기타 스넥코너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매점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이 수영장을 신축한 건물같은데 그런 부대시설을 다 넣어 가지고 할 텐데 종전에 있던 데를 이렇게

개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대시설이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부분을 왜냐 하면 수영장 안에서 음식물 반입은 어디든지 가든지 못하게 되어 있고 냄새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더 개장한 이후에 연구를 해 가지고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진옥경 위원

학생들은 간식을 좋아하고 또 수영장 측에서는 그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해서 가져 들어가지는 않게 하되 어떤 일부에서 코너에서라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거기 협소하다니까 하더라도 요거는 학생들의 편의시설로 요런 것들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런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

● 진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성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분명하게 사용료의 징수조례 이렇게 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징수조례라고 하지 않고 사용에 관한 조례 이걸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조례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 지방자치법 제130조 분명히 조례가 상위법에 그것이 목적이 들어가지 않고는 조례가 안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의시설설비등의사용료와 이렇게 쪽 나갔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했어요.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시설사용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법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영용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목적도 분명하게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명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올리신 것을 보더라도 130조에 의해 가지고 고친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대로 했는데 어째서 조례의 명칭까지도 또는 목적까지도 이렇게 안해놨는지 요거를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경쟁력 수영장의 경쟁력 그 운영비만큼은 받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학생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받아서 더 시설을 좋게 했을 적에 다른 수영장보다 경쟁력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국고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 보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회관으로 가면 학생회관이지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일부 법령에 일부라는 게 없습니다. 학생회관이지 왜 일부가 됩니까? 거기다 붙이려면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학생회관의 수영장이지 일부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학생회관으로 이관했으면 학생회관이지 수영장이,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법조항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부라는 것이 왜 일부야 학생회관이 지 그렇게 해 주시고 개정안 끝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개정안에 거기 보면은 또 다만 다만이야 또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 둔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두고 수영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번지에 둔다' 이려면 학생회관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서 학생회관이 되는 거지 다만 이렇게 넣을 필요가 법조항에서 그렇게 넣어서 안 되는 것을 법규문서는 일반문서하고 틀린 겁니다. 일반문서로 법규문서를 넣어서는 안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 위원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 위원장 고규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단재 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제3조제1항 및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초·중등 앞에 유 가운데점(·)을 삽입한다 안 제5조제2항중 9인 이상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5인이내로 한다 안 제 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라고 개정한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기수 위원

과반수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규강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공무원 및 교육·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과반수로 한다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고규강

과반수에 포함되니까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소수의견을 남기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간담회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단재교육상 부분에서 애초에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는 심사위원의 공정성이나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학생을 그 안에서 빼는 것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위원회 간담회 중에 위원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충북학생상조례를 기존의 단재교육상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북학생상을 시상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런 단재교육상의 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위원들 대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충북교육학생상에 관련한 규칙을 없애고 단재교육상 안에도 학생부문을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이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담회석상에서 저의 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고 소위원회 때 안이 올라오면 의견을 내려고 생각을 했었고,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애초에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단재교육상 안에서 그사이에 오랫동안 시상되어온 학생부문을 빼는 것은, 그 상이라는 것에 어떤 기본 정신이나 취지

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학생을 삭제한 도교육청의 단재교육상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소수의견을 첨부하여서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고규강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소수의견으로 삽입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진옥경 위원이 소수의견을 냈는데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단재교육상에서 학생부문만 달랑 떼어낸 걸로 전부 통과가 되어서 그것만 된 것 같이 되면 나머지 위원들이 학생에 대한 것을 소홀하게 생각한 그런 결과로 밖에 회의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본청의 뜻이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수긍한 뜻이 뭐냐 하면 거기에 버금 가게끔 모든 학생상은 한데 묶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그것이 표시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예. 알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부문을 삭제한데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붙여 가지고 소수의견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중 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간사 송대헌

사용료 한 부분을 제가 아까 수정을 했는데요?

● 위원장 고규강

그거는 타 시도를 전부 검토했는데 들어가서 타 시도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올린 원안대로 타 시도의 16개 시도가 전부 일일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송대헌

타 시도에 16개시도지만 아까 내가 설명했을 적에는 사체과장님 어디 가셨나? 아 국장님 계시네.

그 밑에 일일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월회원하고 하는 성격 일일회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수당도 일일 있는데 일일입장료가 타당한 성격이지 타 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타 시도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체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바꿔줘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정리가 됐는데 어째 사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 위원장 고규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관하고 부의장실에서 그 안에 대해서 타 시도 것도 전부 가지고 와서 내용이 타 시도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송대현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가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원제라고 하는 의미가 일일회원 그 밑에 월회원 이렇게 회원제라고 운영할 때에 회원제의 일반적인 통칭으로써의 그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일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회원은 다른 월회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일정기간 고정되어 있는 회원이고 일일회원들은 변화있는 회원들인데 그 회원명칭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그 말씀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

에서는 그 회원이라는 의미가 우리 수영장을 사용하는 거기에 활용하시는 분들의 자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활용하는 분들을 부르는 명칭으로써 통칭으로 일일회원, 월회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간사 송대현

반론을 제가 하나 할게요.

단체회원, 다이빙회원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장님 같이 표를 보면 일일회원이 있고 월회원이 있잖아요. 월회원은 설명을 해놨어요.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설명을 그 밑에 단체입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체회원이라고 일관되게 하지 단체입장이라고 했습니까? 그 밑에 다이빙장하지 말고 다이빙장회원이라고 하지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용어를 쓰는 개념적으로 타 시도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가 다 썼더라도 틀리건 바뀐야죠. 개념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 이기수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송대헌 위원이 애초부터 제기했던 그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는 보니까 밑에 회원이라는 용어를 전부 사용했으니까 첫 번 그것도 회원 속에 포함되는데, 일일에 들어왔다가 입장료 내고서 수영하고 간 사람은 회원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일은 입장료고 그 다음에 월회원이라든지 또는 연회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회원으로서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용어상 적합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성영용 위원**

조금 전에 송대헌 위원님하고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조하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회칙에 의한 것이고 한 달이라는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 수영장하고 일단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이용하는 것은 회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에 동감하면서 일일이용요금이라든지 일일입장요금이라든지 조금 전에 송대헌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찬동하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입니다.

그러면 일일입장료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타지에서 왔다가 1시간 정도 남았다고 그래서 수영복 빌려 갖고서 입장료 내고 수영한 것도 그것도 그러면 회원입니까? 그건 아주 반례로써 당연하게 들어나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부산 있는 사람이 청주 놀러왔다가 야 1시간정도 시간이 남는다 수영복 하나 빌려 갖고서 1시간 입장료 내고 가 갖고서 수영하고 갔다 그것도 회원으로 넣어야 되는 얘기에요. 그거는 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일정기간으로써 서로 유지될 수 있는 멤버십의 어느 의미를 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데서 했다고 그래서 관례상 그걸 계속 따라가서는 안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고치면 다른데서도 달라질 겁니다.

● **위원장 고규광**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월회원이라서 명칭의 통일이나 또는 일반적인 의미로써의 통념은 아닙니다만 활용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회원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에 자연스럽게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중 공공기관사용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26조 별표2중 일일회원을 일일입장으로 한다라고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조항중 ‘다만 학생회관의 일부는’을 ‘단 학생회관의 수영장은’라고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4시 19분)

● 위원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는 6시 11월부터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무제가 확대 실시 됨에 따라서 퇴근시간이 6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조례에 의해서 토요일전일근무제는 토요일무제 실시에 따라서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 토요일무제 실시에 따라서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일 내지 2일간 단축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시행시기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에 출산했을 때 배우자의 휴가일수가 1일이었는데 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일반회계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당직수당을 1인 1회에 3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내년 1월 1일로부터 1인 1회당 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릴 것은 일부에서 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할 때 같이 넣으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가 사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인 전문직과 지방공무원인 일반직이 있고 지역교육청은 똑같습니다. 학교는 행정직과 기능직은 지방공무원이고 교원은 국가공

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직수당안을 갖다가 지방공무원조례안에 넣을 경우에는 적용이 범위가 지방공무원에 한합니다. 국가공무원에 적용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속직비를 현실화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 현재 학교의 근무 구성인원을 보면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둘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3만원씩 인상해서 현실화시키면 일선학교에서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아마 일·속직 근무체제로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적에 지금 말씀 하시는 것으로 봐

서 선생님들도 일·숙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지금 당직제도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일선에 시달한 지침에 당직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결정한다 했습니다. 용역을 주던지 재택을 하던지 또는 교원들 의사를 들어서 교원들이 당직한다고 승낙할 경우에는 교원도 같이 하든 그 선택은 학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당·숙직근무는 학교형편에 따라서 용역을 줘도 되고 또 교사가 해도 되고 그리고 일반 기능직공무원이 해도 되고 일반직공무원이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조의 2항을 신설하시죠. 비밀엄수에 관련한 내용 이것이 첨가된 이유가 그 공무원복무조례중 행자부에 나온 거기에 준하셔서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내용들을 또한 첨가하신 것이죠.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비밀엄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 줄 아시죠?

● **총무과장 안용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만들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줄도 알고 계시겠네요?

● **총무과장 안용균**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부 공무원이시고 특히 그것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왜 제기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 가지고서 다시 또 조례로 제정할 필

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셨나요?

● 총무과장 안용균

저희는 복무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무제를 실시하는데 기관단위로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 받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육국의 전문직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관리국의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내에서 솔직히 직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그거만 틀릴 뿐이지 어디는 적용을 받고 안받고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그런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근무시간에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근거를 대실 수가 있겠는데 이 비밀엄수 5조2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다시 국가 행자

부에서 나온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준하는 내용을 또 다시 넣음으로써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공무원들의 반발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현재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이 기능직을 포함해서 약 2,960명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시군 일반회계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 소속의 지방공무원들은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디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신 겁니다. 전국적인 공무원들의 조직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엄수가 내용이 사실은 오히려 비밀엄수조항을 유보하거나 삭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으로 치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나 도교육청이나 혹은 도교육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열린행정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또 다시 이 비밀엄수조항을 첨가하는 것은 그런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말씀되겠습니다만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비밀업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냈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의 비밀업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 진옥경 위원

그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있잖아요, 상위법에.

● 총무과장 안용균

법에 있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이것이 행자부의 나온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죠. 그죠. 그 내용을 그대로 지방에 준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태여 이것이 없어도 공무원들은 비밀을 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히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련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은 어디에고 다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다시 여기에 넣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내부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열린행정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차단하는 조항이

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그런 반발을 낳고 있고 또 각 도별로 광역 자치단체나 이런 단위로 비밀업수조항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지난 5월 이후로 7월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에 적용되고 우리 지방공무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제는 그것도 아마 국가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차원의 무슨 법이 아마 곧 개정이나 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원에서 다룰 문제고 지금 현재로써는 각 시도자치단체에서도 이 조항을 다 삽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부 광역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지방광역의회에서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교육청 안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이 안의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이시라면서요?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라고 할 적에 그런 국가공무원 아닌 다른 분들은 6시 퇴근이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교원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그 근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오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런 복무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공무원노조들의 쟁점사항이여 왔습니다. 올 5월 이후로 그래서 저는 무슨 어떤 특정단체를 편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불만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당한 불만이라면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들어주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퇴근시간에 관련해서 1시간이 학교에서 비고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하고 6시까지 기능직이나 행정직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이런 이중적인 근거가 교사들도 어떤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할 때, 저는 이런 것이 불만의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에 관한 것을 헌법소원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토요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  
게 큰 필요성을 못느껴서 지금 자료수집  
하다 끝냈습니다.

왜냐 하면 87년도에 교육부장관의 공문  
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대통령령으로 해  
서 초등학생 기준해서 그때만 해도 아이  
들이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 나와서 등교  
지도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시  
간에 아이들 급식지도까지 다하고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등교지도,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때문에 근무시간을 1시간을 단  
축을 해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쪽 내려  
와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토요일근무제가 앞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어  
쨌든 하루 8시간 근무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큰 필요성이 없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여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선생님들은 지금 말  
씀대로 7시간 근무했어요. 점심시간은 근  
무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4시 반에 퇴근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건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8시 반 출  
근 4시 반 퇴근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이 조례가 확정  
되게 되면 충청북도에서는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내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  
무과장님께서 그걸 안보셨던 사항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에 관해서 보충이라고 그럴까 제가 말씀  
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교원들이 학교에서 점심시  
간이라고 그러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학생  
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을 느낀다 점심시  
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같이 있지 않  
은데 사고가 났다 그때의 책임은 교원들  
이 져야된다 그러면 교원들도 점심시간에  
근무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시간에 모  
두 포함해서 공무원근무시간 8시간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퇴근을 5시로  
한다는 공식적으로 나온 배경은 아닙니다  
만 그런 배경도 깔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생각하는 점심시간은 우  
리는 학교교육에서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점심시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모른다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도 우리교원들이 모  
두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 때문에  
의무 내지는 책임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들도 시간에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식사지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등 교지도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또 점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런 이중적인 근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일괄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써 교사는 특별 대우한다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들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일괄 같은 기준에 의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 말씀이죠.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직하고 교원하고의 어떤 퇴근시간 차이 때문에 갈등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교원들을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정해 가지고서 지금 5시로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직들은 사실은 현재 대부분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5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6시로 해야.....

● 총무과장 안용균

다만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만 아니고 충청북도교육청에 근무는 일반직이 다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6시로 바꾼 겁니다.

그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학교에도 근무하지만 저희 교육청에도 근무하고 여러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1시간을 할 경우에 교사가 1시간을 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서도 또 차별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근무를 복무시간 이외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근본적으로 지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 적용은 우리 일선 학교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부장관이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도 별도로 우리 지방공무원들 같이 어디 나가서 식사한다든지 하지 못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식사지도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근무시간으로 쳐서 총 8시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지방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은 식사시간을 뺀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선학교에 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다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 위원장 고규강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너무 기니까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은 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서울시 같은데 큰 학교에 가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충청북도의 저희 아이들 이런 경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끼리 외부에 다 시켜다가 교무실에서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어쩌다 가서 봐도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준용이 된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를 내내 안고 계시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한테 적용시켜야 될 것을 여기다가.....

● 진옥경 위원

어쩌다 간 거는 저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침으로 그냥 내려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특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차별을 준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업무의 하중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개선을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선생님들은 어떻게 불평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직, 기능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요 문제가지고 불평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얘기들을 빗발치듯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러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떠맡아라 이런 식이 아니고 서로 간에 뭐랄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일괄 이런 것들을 지방직에서 부당하면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든지 하셔야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 안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제가 이해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밀엄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부산과 울산 이쪽 편에서는 이것을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고 그

리고 연가부분이 있습니다.

연가를 하루 이틀 단축을 했다 토요일 무제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노는 날을 위해서 나머지 날 더 많이 일을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를 더 놀기 위해서 연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토요일을 쉰다 일요일을 쉰다 이런 것은 삶의 질을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써 지금 토요일 무제가 생긴 것인데, 근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주중에 업무의 어떤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 연가를 단축시키는 형태로 간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는데 애로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업무처리과정에 생긴 비밀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 진옥경 위원

그거야 글쎄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고

● 총무과장 안용균

연가일수를 축소한다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는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고마

운데 사실은 연가일수 한 6년이상된 사람이 2일줍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솔직히 공무원인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1회 7월부터 월2회 내년 7월부터 월4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4회라면 매주 토요일날 휴무가 됩니다.

그런데 6년이상된 공무원이 이틀 연가를 줄였을 경우에 사실 그것이 공무원들 생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뜻에서 저는 이 안이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지금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유보를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다른 위원님,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문에 제5조2항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인데 물론 비밀을 공무원으로서 자기직분에 관한 사항이 나가면 안되겠죠.

근데 이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만일 부당한 목적이나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는 어떠한 대책이 즉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 그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대안이 하나도 멘트가 안 되어 있고 두 번째, 연가일수에 관한 사항인데 하루나 이틀이 대개 줄었는데 하루나 이틀을 줄인 단축할 수 있는 기준 점은 뭐가 있었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불만의 여지는 없는지 혜택받는 공무원들이 없는지 그걸 한번 질의 드리고 싶고, 당직하게 되면 당직하는분의 점심은 점심급량비는 별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주는지 3만원에 포함된 건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위반했을 때 처분관계는 이미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지 않았고 연가일수관계는 시행시기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연가일수 많이 내리면 저거할 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적으면 하루 많으면 2일간 단축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크게 불만한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식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성영용 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밀엄수의 의무라든지 그런 의무 조항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법이죠 그런 것은 징계관련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된 거구요.

그리고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물론 토요일무제를 해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연가일수도 하고 토요일무제하고 하면 너무 노는 날이 많지 않느냐 연가일수를 줄이고 또 심지어 국경일도 일부 축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무조례에 관한 요번에 개정되는 건들은 전부 다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토요일무제함으로써 연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당연히 줄여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무제함으로써 겨울에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 근무하던 걸 9시부터 5시로 단축근무 했던 것을 1시간 연장 이렇게 됐을 때는 대개 겨울에는 말입니다. 상당히 일찍 일몰시간이 일러지기 때문에 근무했을 때 본다면 그 시간 1시간은 밖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한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 결국은 그냥 잡아놓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가요. 결국은 공무원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 갖고서 그 만큼 일을 하고 해 갖고 효과를 봐야 되는 얘기인데 그냥 시간을 대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그 부분만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했을 때 공무원들이 1시간을 얼마만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이 늘었다고 한다면 최대한대로 각과나 계단위로 해서 1시간 연장된 시간을 갖다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운영도 금년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운영도 그렇게 할 예정

입니다. 물론 일몰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굉장히 오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하기 때문에 하 여튼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건에 대해서 잠깐.....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성영용 위원**

지금 현재 동절기 근무시간하고 하절기 근무시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근데 그걸 조금 전에 진옥경 위원님께서 딱 잡고 넘어가지 않고 대충해서 말씀이 됐는데 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양보를 안하시는데, 동절기 근무시간은 당연히 그렇게 5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까지 6시로 계속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이익된 처분이 아닌가, 또 하나 거기하고 같이 되어서 진옥경 위원님께서 같이 얘기하신 부분 교육전문직들은 지금 7시간 근무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치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까지 늘게 되니까 지금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은 불만의 여지가 더 많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절기하고 하절기 근무시간은 변동없이 이거를 6시로 딱 못박는 것은 잘못된 어떤 하나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김남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근본을 알아야 결정이 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근무시간이나 연가 일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상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국가에서 근무시간이나 연가일수를 가지고서 현재 법제화 되도록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으로다가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하고 하절기에는 기타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아까 교원에 대해서 근무시간 말씀이 나왔는데 교원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 줄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무분위기가 선생님들이 일반공무원은 9시부터 시작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8시에도 나오고 8시 반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5시 반까지 6시까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아주 메마르게 9시, 5시 딱딱 끊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시책을 보면은 자율출퇴근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8시 반에 근무하면 4시 반에 퇴근할 수 있다라는 연구학교까지 두어 가지고서 교육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저 위에서 중앙정부서부터 내려온 시책을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한

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권한밖에 있는 걸 갖다가 논의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훈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그것은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방은 여기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을 준용하다 뿐이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밀엄수조항을 울산이나 부산이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가일수 축소라든지 동절기 연장근무 이런 것들도 전국의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결정사항 밖의 것들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제정

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의회에서 이것이 통과안된 이유는 뭐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복무간에 규정을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만 적용을 받고 그건 아닙니다. 전 국가공무원 다 적용받는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잠깐만 오래 걸려서 안돼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지금 교육위원님들 우리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우리 과장님, 국장님 대화는 법에 대해서 조금 모르셔서 그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앙공무원 대통령령이에요. 교육공무원은 중앙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또 우리의 교육감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어서 복무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법에 의거해서 만드는데 자꾸만 따질 필요없는 거예요. 그 법에 의

해서 우리 실시하는 거예요.

즉 여기 51조 지방공무원법에도 봐도 비밀엄수조항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거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하위법.

상위법에 의거해서 하위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은 대통령, 헌법 이런 것 못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몇 조에 의거해서 법령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법 여기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지방공무원이 9시까지 근무하든 6시까지 근무하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지금 법을 마음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안되는 겁니다. 법에 지방자치법 공무원이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6시까지 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근거해서 비밀엄수조항 다 있잖아요, 법령에 말씀을 하세요. 기획관리국장님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다만 이미 동·하절기의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토요일무제를 결정할 적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정해

진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러한으로써 토요일무제를 하자 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하고 행자부하고 틀린 부분이 우리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하고 하는 일하고 틀린데 그걸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한은 이미 다 국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다 이미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법인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위원장 고규강

못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그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입각해서 이걸 비밀엄수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분명하게 진육경 위원이 알아들을텐데 그거를 얘기를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되묻고 되묻고 시

간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했습니다. 1에 해당되는 사항은 1,2,3,4항을 전부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경우하고 사항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입니다. 경우하고 사항은 그럼 위에 5조의 2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하면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도 경우가 아니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전부 사항으로 바꿔주셔야지 어떤 건 경우도 어떤 건 사항이고 요거를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복무조례를 제가 전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6조에 가면 당직 및 비상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규칙으로 집어넣었어요. 규칙으로 의무규정을 갖다가 규칙으로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즉 조례는 지방법령입니다. 법입니다. 교육위원이나 도에서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복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징계를 줘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음주를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속직실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에 의무규정을 빼먹었습니다. 이게 타 시도 것을 한번 보세요.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의무규정이 빠져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복무조례에 그거는 나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적으로 법무관담당실을 신설해서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복무조례에 공가를 제가 봤습니다.

공가를 보니까 공가에 국가공무원법 국가가 적용하는 법과 지방자치법하고 틀린데 그걸 구분을 못해서 이게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32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몇 항이나 하면 21조에 보면 7번에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비해 주세요. 그건 지방공무원법 29조를 적용해야 됩니다.

왜 지방공무원에 관한 복무조례이니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서는 안돼 근데 국가공무원법 32조를 여기다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96년도에 이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방공무원법을 복무조례를 만드는데 국가공무원법 32조를 거기다 해놔서 안되고 그것도 좀 고쳐주시

고, 거기에 보면 32조에 보면 공가를 줄 적에 우리 조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공가를 줄 적에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어떻게 공가를 줍니까? 시험에 응시할 때야 되는데 시험에 응시할 때 조례에 어떤 선발 기준에 어떻게 이틀이나 3일이나 시험을 본 뒤에야 주는 건데 조례에 그게 명시되지 않고 그냥 32조 이렇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하실 적에 제가 한번 뒤지다 보니까 요번 복무조례를 뒤지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가지고 복무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일괄 정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법시행령이에요. 그게 교육훈련법시행령 32조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아니라 여기는 32조는 국가공무원예요.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29조로다가 지방공무원 신설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부하고 전화를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분명하게 아닌데 조례로 올라 왔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에 노윤환 교육행정

주사 이분하고 전화를 세 번 통화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속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시험감시수당, 출제수당, 시험감독수당, 서류심사수당 등 경비성격인 예산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해 오던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줬습니다. 국가에서 지방분권차원에서 일·속직수당 한 가지만을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일·속직수당만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조 규정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신설하면 된다고 보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6조요. 신설해야 된다고 보며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거는 복무조례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른 수당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면 됩니다. 여기 조례로 올리실 것이 아니라 종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예산을 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당직수당을 지방분권 이양차원에서 시달된 것으로써, 복무조례 제6조 규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교육공무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니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물었어요. 인적자원부의 그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하루만에 연락이 와서 같이 상의해 가지고 했는데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즉 대통령령이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전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령을 준수하되 당직수당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을 내부품위로 교육위원회 의장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심을 얻어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올리시지 말고 인적자원부에 물어 보시면 충청북도만 조례로 올렸다고 할겁니다. 올리시지 말고 당직근무 복무조례 6조에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삽입을 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충청북도만 특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에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했더니 그래서 그렇게만 다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공무원하고 지

방공무원의 구별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반직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다 구별되어 있고 또 여기 도교육청에도 국가서기관과 지방서기관 다 따로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차이 발령권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 우리 교직은 국가공무원에 속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제안한 이 사항은 지금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다 아우르는 안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선생님이나 또는 국가직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만 제정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진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한 국가공무원법의 범위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그걸 맞추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다 내놓고 우리가 조례 정할 필요가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 위원장 고규강

얘기는 하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준용을 해야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충청북도 장이 교육감이예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은 별도로 우리가 범위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복무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모법을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모법의 하위법이니까 조례라는 얘기는 모법에 대한 하위법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법이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고규강

할 수는 있죠. 근데 법을 테두리는 못 벗어나죠, 우리는.

● 진옥경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안 대로 통과된 것은 31개의 지자체고 비밀엄수조항이나 또 주 5일제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행자부안 대

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57개 지자체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직수당을 갖다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다가 그걸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따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당직수당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넣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다가 당직수당을 넣으면 지방공무원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별도로 국가공무원인 전문직과 교원들은 따로 정한다 이걸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직수당은 사실은 기관단위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교육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정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수하되 이 지침에 내려온 것을 지금 내가 전부 카피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준수하되 당직수당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 여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왜 국가기준으로 못주니까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직수당을 내부품위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감의 결심을 거쳐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에서 그랬으니까 다시 물어보시고 타 시도는 전부 그렇게 했어요.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내부품위를 해 가지고서 교육위원회의장과 협의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뭇 때문에 맞지 않아요?

●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내부품위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할거나 만원으로 할거나 그

지침을 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내부품위로 3만원으로 만들면.....

● 총무과장 안용균

그 내부지침을 교육감지침을 받는데 의장협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장협회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품위로 3만원을 지급한다라는 품위를 받아 가지고 교육위원회의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급하면 되는 건데 왜 안됩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까지 저희가 당직수당 책정한 것이 예산편성이전에 당직수당을 갖다가 만원으로 할거냐 3만원으로 할거냐 교육감지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받기 이전에 교육부에서 사실은 만원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 없는데 이 지침을 만약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감지침을 받는다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의장의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교육위원회의장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그러면 그걸 한번 인적자원부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올려주시도록 이걸 조례로 못정해 조례로 정하려면 모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거를 전부 다 올려야 돼 일직수당만 올릴 수가 없어 그 분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충청북도만 조례로다 올렸다 16개시도 중에 한번 교육인적자원부와 상의해서 가지고 요거를 해 주십시오. 조례에 3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안용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금년 5월 1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문으로 보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산하 각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조례로 정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괄되게 금액을 정하던 걸 갖다가 시도 자율로 맡기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적자원부에 작성한 노윤환 서기관, 김병규씨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뭐 때문에 이걸 건의했냐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 거를 조례로 만들려면 일·

숙직수당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5시 53분 속개)

거기에 있는 사항 전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문을 내려보낸 걸 보면 일·숙직수당에 한해 가지고 시도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야 그런 걸 물어봤더니 아 이걸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복무조례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다른 시도 마냥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적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직은 어떻게 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 동안 연구를 한 건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어보시고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2시에 시작해서 3시 15분이니까 잠깐 한 10분쯤 정회하시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견해 틀린 것을 교육부에다 확인을 해 갖고서 이거 여기서 또 우리가 그걸 결론 내 갖고서 얼른 해야 되니까 정회하시고 그 결과를 간담회에서 얘기하고서 통과시켜 주든지 보류하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 위원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규강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계획서, 건전성 제고와 열린 행정교육을 위하여 외부위원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 중 본청소속 공무원 위원 10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위원 5명을 11명 이내로 확

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4년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청북도 도보 및 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비추어 갖고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소속의 공무원 10명이고 외부인사 5명 이렇게 15명으로 됐었는데, 그걸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을 4명으로 줄이고 6명을 외부인사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상당히 찬성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참여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 15명이라

고 했어도 사실 10명은 교육감소속 공무원에서 집행청의 국·과장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외부인사 5명도 청주시교육장, 여기 서해수련원의 원장 또 모고등학교 교장 그러면 그 13명이 들어가고서 나머지는 도의원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추천된 저하고 교대교수 이렇게 밖에 안들어가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교육감 산하 공무원 속에 청주시교육장도 들어가야 되고 서해수련원장도 교육감산하의 소속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교장도 교육감산하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분명히 해야지 되는 얘기지 그 얘기가 법은 정해 놓고서 그걸 위촉을 할 때 객관적이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외부인사를 추천해 갖고서 위원으로 해야지 여기 도교육청 산하에서 한 건물 안에 있는 공무원만 교육감산하 공무원 이렇게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적에 청주시교육장님이나 학생수련원장 같은 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소속 공무원이었던 과장님들도 한 5분은 일반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술전문가도 참여를 시키고 또 학운위대표라든지 또 퇴직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교장도 제외해야 됩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래서 초등교장님 한분이라든지 중등교장님도 한분 이렇게 영입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초등교장이든 중등교장이든 현직에 있는 분들은 하시지 마시고 외부에 자유롭게 된 퇴직한 교장으로서는 자기소신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와서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저의 생각이 별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 자신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제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비해서 매우 폐쇄적이고 또 낙후되어 있다 여러 가

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기 싫으시고 여기계신 교육계의 계신 분들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지는 하지만 어쨌든 초·중등 입장에서는 내내 이런 것들을 인정 안하십니다.

저는 아까도 단재교육상 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원회라는 것들을 설정할 때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이미 NGO를 하나의 행정파트너로써 인정하고 또 그런 위원회나 이런 시청자위원회 언론부분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애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참다 못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어쨌든 자기의 사사로운 생활을 뛰어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NGO고 특히 정부기구에 대한 어떤 비판과 견제의 역할들을 주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나 물론 개개인으로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시민단체이고 그 NGO의 구성원들이 매우 중요한 공정성의 담보자로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랄까 할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이렇게 하실 경우에 저는 과연 그 상이나 어떤 지금 이런 재정이란지 이런 것들이 공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반수이상이라고 해도 결국은 말씀하신 현직이나 아니냐 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NGO에 관련해서 저는 과반수이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NGO에 대해서 과반수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무리신 것 같고, 다만 여기 학식이 풍부하다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NGO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포함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볼 것 같으면 10분의 위원이 있다고 해도 거기 NGO에 관여하시는 분이 한 두분 있어도 역할을 다 하십니다. 꼭 과반수가 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 해야지만 NGO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과반수라는 이야기들을 아까도 이야기 하셨고 그럴 때 그것이 한 두명만 가지고 족하면 왜 그렇게 숫자에 민감하게 계속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청의 고위 행정담당자들이 이런 인식들을 넓히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2년 남았는데 그간의 추이나 또 앞으로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열린 형태로 나가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구성등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성 및 자격까지를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구성 및 자격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1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교육감소속 공무원 4인과 11인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구성

위원이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3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2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자가 된다 위원구성 및 자격요건에서 자격은 1항과 2항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제외한 3명과 나머지 교육감이 11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3항이나 이거는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요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4항은 위원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2,3항을 거치고 4항에 왔을 때에는 위원은 벌써 위촉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임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렇게 하고 뒷얘기를 하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2항2조 규정에 의한다 이려면 그 앞을 또 봐야 되지만 그 앞에 부분은 같은 조항 내에서 벌써 기 위촉이 된 사항과 또 부위원장 또 위원장이 구성된 이후에의 임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고쳐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위원의 자격도 있고 구성도 있고 임기도 있습니다. 통상은 저희들이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세 가지 이렇게 나열이 될 적에는 그냥 등 간단하게 법률적인 용어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이렇게 별도로 항으로다가 분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를 하나 신설해서 제3조 위원의 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통상은 임기라든지 자격 이런 구성은 한 조항에 묶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렇게 묶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고규광

성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 성영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성 등 하더라도 이 내용상에는 누가 봐도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이해하고 집행하는 분들이 잘 알 수 있게 써놓은 것이 조례 아닙니까? 어려운 말로 해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풀이해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 등종죠. 그렇게 하고 제1항 관계는 아까 교육감소속 공무원 4인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뒤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항에 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거는 필요없는 군더더기 말은 빼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법조문은 저희들이 입법사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의 형식과 또 체제에 맞게 이렇게 용어 등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용어는 아주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법조문을 썼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아까 몇 항에다가 몇 조에다가 다시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신설은 필요없는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필요없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위원장으로 지금까지 우리 조례제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2년간 여기 있으면서 법에 대해서 조

금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법무담당관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과 그 밑에의 규칙 하위법 전체를 보고하시면 그 법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하가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적에 제대로 되는데 한 그루의 나무만 보다 보면 틀리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우리가 선서를 할 적에 법령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서를 할 적에 이 4대 교육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했을 적에 5대, 6대 후세에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제정에 있어서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빈틈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지침 국가기준에 의해서 한 가지는 조례를 못 정한다라는 것도 물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해 놓음으로써 다음에 누가 이 교육위원들이 법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교육청에서는 까다롭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을 도와준다 저희들이 도와준다

는 생각과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된 법을 만들었을 적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의 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건데 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는 부끄러움을 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숲을 보는 면에 저기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진옥경 위원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서했을 적에 법령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급식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청원법에 보면 청원이 들어왔을 적에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의 시민단체에서 급식조례운동본부에서 들어왔을 적에 전부 법에 어긋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지적했고 이거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도교육청 소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청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정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옥경 위원은 나머지 6명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건 반대로 생

각하면 진옥경 위원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법령을 어기고 그걸 수리 안한 걸 반대로 정당하게 법령을 익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 나머지 교육위원들을 직무유기라고 한 것은 언젠가는 사과를 하셔야 되고, 또 교육위원으로서 공인으로서 더 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위원회규칙 또는 법령 이런 걸 공부하셔 가지고 공인으로서 교육위원의 자세를 더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청원에 대해서나 이런데 보면 재판에 간섭하거나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우리가 교육위원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여중 건이나 내사에 검찰에서 재판에서 계류중인지 문제를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 안했다고 직무유기라고 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올바르게 처리하는 교육위원들은 직무유기고 법령을 준수한다고 선서한 교육위원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거꾸로 남에게 직무유기를 얘기한 우리 동료위원이 부끄럽고 가장 부끄러운 것은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의장님한테 그때 어겼을 적에 타인을 모욕하거나 중징계를 주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도량과 관용 이런 것이 넓으시기 때문에 가장 가벼운 걸로 징계

를 찾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법과 질서를 어겼을 적에는 도저히 본인은 참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답변해 주십시오.

● 진옥경 위원

법이라는 것은 늘 완결된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그 순간에 공포되고 또 그것이 모순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만능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변합니까? 모순이나 그리고 고충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또 그 법은 개정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급식조례부분에서도 애초에 시작할 때는 도의회나 도교육위원회나 하는 그런 굉장히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서로 달랐던 시절이죠.

지금 이것이 교육부가 해석한 것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로부터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그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곧 그 법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받아서 충분히 그것들을 유보하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바뀐 법령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청북도급식조례는 온 도민들 특히 농도로써 충청북도의 어떤 요구들이 너무나 절실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급식조례가 여러 가지 지원법으로.....

● 위원장 고규강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청원법에 어긋났나 안났나 그 청원법 66조를 보시고.....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도 길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 위원장 고규강

뭐에 의거해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우수농산물 부분도 지금 엇그저께 교육부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농산물을 살리려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면서 지금 권고조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 중요한 것이지, 곧 있으면 어떤 부적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 법 만능주의를 저는 경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 그리고

사람 위에 법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다시 이 부분에서.....

● 위원장 고규강

법을 어겨도 된다 이런 얘기죠. 더 얘기하실 것 없고.....

● 진옥경 위원

어긴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고규강

청원법 66조에 어긋난다는 걸 얘기했으면.....

●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법이 곧 바뀔 뻔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었을 때 청원을 받아서.....

● 위원장 고규강

그래 잘하셨다는 거예요.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진옥경 위원

저는 정당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 위원장 고규강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직무유기고 어긴 사람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 진옥경 위원

법 만능주의가 형식주의에 흐를 수 있고 권위주의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 위원이 될 그렇게 잘 알기에 회의규칙이나 뭐를 알아 제대로 법을.....

● 진옥경 위원

맨날 그냥 규칙, 법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그런 조례안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고 나서 모욕을 하란 말이예요.

● 진옥경 위원

모순을 고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 위원장 고규강

나는 진옥경 위원이 잘못해도 직무유기란 말을 안했어

● 진옥경 위원

뭐가 직무유기입니까? 제가 직무유기한 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장 고규강

많이 있지

● 진옥경 위원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반말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까지 반말 안했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청원서에 법을 어기고 하신 것도 그것도 직무유기가 아니고 법에 따라.....

● 진옥경 위원

아무리 그러셔도 글썽 저희들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도민들의 대표로서는 시민단체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고.....

● 위원장 고규강

그건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갑자기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다 말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월권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조례제정이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아까 두 조례에 제가 소수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 위원장 고규강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결과 제5조의제2호 내지 제4호중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한다'라고 하고 기타부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고충이나 불만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의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고 비밀엄수조항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차단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써 삭제되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주장과,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유보를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여전히 법 만능주의이나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것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진옥경 위원

소수의견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규강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 진옥경 위원

소수의견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규강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진옥경 위

[제169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원님 발언은 소수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고규강, 간사 송대현,  
위 원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6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중등교육과장 연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9. .

위원장      고 규 강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4. 8. 16.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4. 8. 17. (화)  10: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 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第169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407

II.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411

III. 부 록

-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463
- 2. 서면답변서 ..... 465



#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6일 (월요일) 11시 45분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45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승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승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송대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가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47분)

● 위원장 송대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이기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이기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소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추가경정예산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48분)

● 위원장 송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8월 19일 2일간으로 하여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9회-제1차 예·결산소위원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8  
월 19일 10시 30분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대헌,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성영용, 진옥경.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8월 19일 (목요일) 10시 27분

議事日程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개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위원장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

▶ 참 조 :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대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규강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먼  
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안  
에 대하여 3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  
다.

첫째, 제166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에  
상정된 잉글리시타운의 건립안을 교육위  
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운영계  
획안이 부실하니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계  
획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라고 누차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부  
결된 사유와 부결될 때의 운영계획안과

다시 보완 작성된 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대헌

답변하시죠.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잉글리시타운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  
기를 기대해 주셨었는데, 저희들의 준비  
과정과 또 그에 따른 홍보 및 관련내용의  
준비가 미흡해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것에  
관해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  
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에 잉글  
리시타운조성 관련된 자료를 올리게 되어  
서 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  
명을 일단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대  
체되는 걸로만 알았는데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바로 드리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목적  
이 구체화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잉글리시타운건립과 관련해서 도민들, 학

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더하고 그와 관련된 운영프로그램 내용면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1박2일이나 2박3일 같은 그런 과정도 좋지만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 그리고 중기지방교육재정에 포함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바로 현장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을 표집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전문직과 또 영어교육 관련한 현장의 관리자 분들께도 의견을 들었고, 타 시도의 잉글리시타운과 비슷한 그런 유형도 봤습니다만 주로 타 시도의 외국어교육연수원 그런 쪽을 많이 둘러보고서 내용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때와 2차 때의 프로그램내용의 차이 면에서 1박2일하는 것이 1박2일이나 2박3일 단기간 운영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학기 중에 많은 학생들이 장기간 적어도 2주 내지 4주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빼고 특별교육과정에 참여할 때는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생시에는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해 주어서, 원어민들과 대화

를 해보고 그리고 외국어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얻어줘서 학교교육에도 도움이 되겠다, 특히 개인별로 인터넷을 활용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과도 관련해서 연계를 지으면서 외국인을 활용한 원어민을 활용한 학습지도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기간이 단기간의 효과는 단기로 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참석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학생들이 영어학습을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줌으로써 스스로 영어학습을 하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학교별 자체학습을 하는 것도 그저 일반적인 학습보다는 잉글리시존을 지정해 가지고 동아리반이나 또는 단위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원어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수업 제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단위의 중급단계에서 원어민 확보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전과는 달라서 해외거주 경험있는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 분들을 그 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생님들 선도요원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는 특별영어교실에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 봄을 조성해서 영어교

육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잉글리시타운과 관련된 것은 제3단계사업으로써 학생들이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영재성교육의 심화과정을 잉글리시타운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하는 추후지도연수도 거기서 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장기 3주 내지 4주에 걸친 심화과정도 여기서 연수를 하면서, 특히 사이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초·중학교 학생들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에 참여를 해서 영어교육에 자신감과 함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또 따라서 그걸로 해서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두면서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업을 그렇게 당초 예산에 없이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잉글리시타운 조성관계를 구상하기는 여러 해 전부터 위원님들의 지도말씀도 듣고 해서 장소선정 또는 운영방법 등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었는데, 금년도 2월 17일에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영어교육 활성화 부문이 하나의 영역으로 나와 있어 기왕에 할거면 국가시책과 맞도록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계획하는 바람에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그런 말

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 ● 고규강 위원

국장님 그거는 설명을 안해 주셔도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 전보다 달라진 내용들이 저희가 원어어민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영어교사 하계연수 때 교육감님이 대동을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캐나다의 토론토에 교육청에 들리셔서 우리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당해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임명하는 명예교육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의 활동으로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우리말을 전혀 활용하지 모르는 우리 교포2세대들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말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런 교육을 오는 학생들이 또는 일반인들 학부모를 대동하더라도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과 합숙을 하면서 의사소통능력을 신장하고 원어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상황에 따라서 공항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등등 생활과 관련된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원어민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의 핵심은 지난번 부결되고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제출했을 때는 잘 통과되기 위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하고 차이점 부결된 사유는 설명하셨습니다.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 고규강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부결된 사유는 여기 보니까 운영면에서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효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됐다라는 게 도위원들의 일문일답을 통한 걸 자료를 제출받은 걸 보니까 3가지 측면인데, 그 3가지 측면을 보완을 다시하지 않고 다시 도의회에 올려 가지고 부결되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은 결과중심보다는 과정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사업이라는 건 민간기업이라든가 국영기업 전반적으로 결

쳐서 사업의 효과를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면 잉글리시타운을 건립해서 여기 보니까 잉글리시타운 건립계획, 중장기계획, 교육계획, 수정계획안에 맨 끝에 사업효과가 해외어학연수 및 유학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 사교육비 경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외국어능력 신장배양 이렇게 했을 적에, 도의원들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해외로 나가고 유학을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학생외국어능력이 신장된다 외국어능력 신장되는 건 뭐 얘기 안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줄인다 흡수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 구체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10일 갖을 적에 드는 경비 또 유학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드는 경비 또 잉글리시타운을 건립해서 여기에 똑같은 기간동안 했을 적에 경비 얼마만큼 경비가 준다 확실한 데이터가 사업효과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외국어능력이 신장된다 학교에서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어학실습해도 신장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되지 그러나 우리 잉글리시타운을 건립했을 때 원어민이

몇 명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외국서 하는 것보다 차이점이 뭐다 따라서 외국어능력 신장도 외국에서 하는 것보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또는 도의원들에게 제출했을 적에 이해를 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돈이 많이 유출되는 것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계획을 세울 적에 어떻게 보면 타운을 건립하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게 마찬가지로입니다. 야영장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그 사업 효과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건립하고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거는 그거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 **교육국장 김전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두 번째는 교육환경조성 및 여건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다목적교실 건립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건립계획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다목적교실과 다목적실의 그 차이는 명확한 법정용어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혼용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점은 7차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을 위한 다목적공간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다목적교실은 권장시설로써 강당, 체육관겸용을 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실시를 위한 대규모 공간을 말하고 다목적실은 그보다 작습니다. 수준별 교과운영과 특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다목적공간을 지칭합니다.

이건 기준시설에 해당하는데 주로 면적에서 볼 것 같으면 다목적교실은 1실당 최저 846㎡에서 최고 1,440㎡수준이고 다목적실은 1실당 270㎡내의 규모입니다.

● **고규강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기준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 초·중·고에 또 시·군별로 요렇게 학교를 연차적으로 지정해서 해 줄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야기 하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별로 해 주느냐 하는 걸.....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선정기준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선정하는 기준을 대개는 학교급간 2개이상의 학교가 동일 군에 있거나 근접하고 있어서 공동사용이 가능한 학교 또 소규모학교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학교 통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통폐합해서 하는 학교 그 다음에 1면 1교 유지학교로써 학교규모는 작지만 학군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 등의 요인으로 학생수 증가 전망이 있는 그런 학교 또 농구, 핸드볼, 배구 등 실내경기가 주가 되는 지정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또 자치단체에서 다목적교실 신축비 일부 지원계획이 있는 학교 순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기준안이 있습니까? 그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대충 요런 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지역 시군교육청 간에 보편은 다목적교실 수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원하고 보은이 평균치보다 상당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곳이 대개 그렇게 다목적교실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괴산하고 증평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괴산하고 증평이 같이 있었을 때에는 지금 평균치인 32%가량이 됩니다. 다목적교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근대 증평이 60%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괴산이 22%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 하면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 보유현황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학교수에 비해서 30.1%가 다목적교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옥천군은 40%인 반면 청원, 보은 아까 말씀드린 괴산 이런데가 19% 내지 22% 평균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급별 보유현황으로 보면 초등이 24%, 중학교가 31.7%, 고등학교 49.4%, 특수학교 11%로 보유비율로 볼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학급수별로 분석을 해 보면 지역별 학급수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학급을 선순위로 하여 다목적교실을 배정하였으나 학급규모 대소에 따른 일정한 기준은 제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설립년도별 현황을 보면 지역별 학교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도 대개가 오래된 학교를 선순위로 하여 다목적교실이 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역시 학교 설립년도 순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시설환경에 있어서 형평성과 타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형평성, 타당성이 근거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아까

기준 쪽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설립을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자기 시군에 다목적교실이 라든가 강당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도교육청에 부탁을 해 가지고 지어주는 사례는 앞으로 일체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형평성이라든지 맞도록 하고 지역의 어떤 분의 영향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교육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소문이 나니까 미리 1년, 2년 전에 예를 들면 아 이 학교에 강당 지어주겠다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소문이 안났으면 우리가 모르죠. 그죠. 이걸 다 알게 마련이에요.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마땅히 해야 할 교육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에 저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혁신위원회설치를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추경안에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반영이 됐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랬어요. 몇 명, 확실한 인원이 몇 명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 총무과장 안용균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혁신복지팀을 갖다가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복지팀이 실제 확정된 것이 지난 8월 11일날 시도 담당과장 회의 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저희가 마치고 와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고, 거기에 우선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혁신분권팀이라고 그래서 발령을 했습니다. 명칭을 인원도 사실 그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2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예산을 요번에 20명분을?

● **총무과장 안용균**

20명으로 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추경예산편성에 수고하신 양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보면은 교직원합창단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01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임차료 100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으로 총 2,57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음악에 관심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도교육청에서 후원성격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행사를 관장하여 2차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체능과 관련된 학생행사가 아닌 선생님들 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산만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사 때마다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원화한다 그럴까 하나로 모아서 관심있는 분들 또 그쪽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우리 타 시도에도 있는 겁니다만 그걸 따랐다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도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재능도 발휘하면서, 그것이 곧 학생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시범이라고 그럴까 모델로써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다른데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조직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고 다인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데 연습한 결과를 또 보이기 위해서는 발표할 수 있

는 기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남훈 위원

2,575만원 예산이라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의상비가 20만원씩 90벌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볼 적에는 공연이라고 할까 그 분들이 활동한 모습을 학생들 내지는 관중에게 무슨 공연할 계획은 없으신지?

● 교육국장 김전원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술문화회관을 대관을 해서 공연을 발표회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참관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관심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첫 번 한번 행사를 그렇게 하고, 꼭 이년 금년의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는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나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그분들께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에 걸맞는 그러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단 음악뿐이 아니라 미술교과서클도 보면은 해마다 자기들 스스로 전람회를 열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 2회 추경예산안에는 유독 성립전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립전 사업예산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임차료 탐구 체험학습비 지원 50만원을 400교 2억 예산을 들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교란 어느 학교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은 이유는 국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인데 국고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늦게 도착이 됐기 때문

에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두 번째, 400교는 초·중 도내에 있는 450개 학교를 저희가 12개 과학관 테마 중심의 과학관을 만들어놨는데 그 과학관을 당해 군에 있는 과학관을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이용을 했는데, 지난 평가에서도 권역별로 묶어서 타 시군에 있는 과학관을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관을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학교별로 운송비를 50만원씩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이 다 임차료 운송비란 말이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학교별로 400개 학교에 대한 운송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제외된 학교는 운송비가 들지 않아서 여기 포함되지 않았?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450개 학교인데 초·중은 다 들어갑니다. 분교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지역교육청별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인데 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제외되고 하면 400교만 가지면 충분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 72, 73페이지에 우수자료제작비 지원비로 편당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으로 극히 미미한 금액을 추경에 형식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와 만들어진 우수작품들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추후지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지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과목을 경정하는 요런 내용으로 적어드린 것이고 80작품을 한 것은 약 450편의 작품이 출품되고 입상이 됩니다. 그럼 중앙에 60편 내지 80편을 내서 그 작품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입상한 작품의 보상형식으로 추가지원비로 지원되는 내용이지 전체 지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에 출품된 작품의 추가 보조제작금이고 일반화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 여기서 전시회를 한 뒤에 그 작품을 에듀러브 내지 이런 홈페이지 같은데 전부 올려서 각 학교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활용하도록 요렇게 하고 있습니

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작비 성격이 아니라 중앙에서 입선된 작품에 대한 포상금 형식이란 이 얘기이예요.

● 교육정보화과장 김겸

그렇습니다. 지원금입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청별로 지역산업체 등 체험학습장 조성비로 충주교육청 4,000만원, 충주·제천 3,000만원, 기타교육청이 2,000만원씩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체 등 체험학습장 운영내용과 성격은 무엇이며 전 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지역산업체 등 체험학습장 조성비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지역과학테마교육장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다시 만드는데 지역산업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체험학습

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지역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든다든지, 전통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과학관중심으로 내부적인 과학관중심으로 체험학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외부환경용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시단위는 예산을 더 편성했고 군단위는 예산을 좀 적게 해서 학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남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까지 가려면 9월 이후 10월초나 돼야지 이것이 확정될텐데 과연 특색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10월 이후부터 추진한다라고 하면 추진이 제대로 될까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그것도 2차 추경에 편성해서 그것이 사업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사업을 2차 추경에 올렸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에 기일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만 사전계획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허락

만 해 주시면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금년도 2달 가지고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럼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친 고규장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도 잉글리시타운 예산 삭감이 도에 가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영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만드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복지후생에 학생교육복지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후생비에 학생복지가 포함되니까? 안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정책해 가지고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 성영용 위원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로 복지후생비에 학생복지도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추경 예산에 중점편성을 한다고 그랬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성영용 위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 학생교육 복지 결과적으로 복지후생비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인데,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은 복지후생예산 구성비가 5.6%에서 5.5%로 0.1% 하락이 되었어요. 또 금액에도 전혀 변동이 없고 이러면 당초 중점편성한다는 그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후생복지비는 지금 별도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사실은 사업 속에 묻혀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렇지 전혀 후생복지 이것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성영용 위원**

전년도보다 줄은 것이 아니라 금액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래서 지금 여기 11쪽에 있는 것은 복지학생비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후생비만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같이 학생복지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질의를 먼저 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보편은 학생들 부분은 저소득층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별로 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여기 경비에 또 중학교는 중학교 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 **성영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국장님께서 대답하시피 복지후생비에 학생복지가 같이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관별사항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저는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후생하실 적에는 포괄적으로 하실 적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에는 학생들 복지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관에 이렇게 다 묻어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아니 묻어서 한다면 관별사항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후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학생 또는 공무원 별도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님 과학선도학교운영이라든가 과학교실운영이라든가 과학동아리반운영이 부실했었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세 가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 **성영용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번 예산이 상당히 많이 경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지원이 감 교부에 따른 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 또 역시 중점편성지침에 의한 과학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물론 국고에서 지원이 감 교부됐다 하더라도 당초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서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 내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지금 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육성차원에서는 국고서부터 예산삭감이 돼지 않아야 되는데 국고에서 7억 2,500만원이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과학교육활성화 5개년 계획이 교육부에서 나왔지만 국고예산지원이 원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비에서 교육감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족한 것을 지방비로 해 주시는 바람에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다다익선이라고 예산 계획된 대로 주시면

좋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성실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집행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 과학교실운영이라든가 과학선도학교운영비가 3,000만원, 각 교육청 공히 과학교실운영비 500만원씩 해서 11개면 5,5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또 과학동아리반 운영에 25만원이면 큰돈이 아니에요. 각 교육청별로 그래서 대충 보면 한 1억 3,000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과학교육을 내실화하면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증원이 되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깎아 내린다는 게 큰돈도 아닌 것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점편성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취지가 없잖아요. 이러면 뭐 하러 중점편성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국고지원사업의 5대5로 매칭펀드를 한 다든지 7대3으로 한다든지 8대5로라든지 이런 조건부로 해서 국고지원예산이 나온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중에서도 그래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학실업분야에 대해서는 지방비지원이 그래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려고 예산담당에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고가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지방비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 **성영용 위원**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것 알았으면 알고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잘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애기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비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죠. 그 자료는 어디서 뽑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의 기준과 저희 기준이 조금 일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3만원이하 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만 6천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정의 방법은 저희들의 기준을 일선학교에 시달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과 대비를 해서 전체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 **성영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중식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학교급식담당 함정기입니다.

중식지원기준은 교육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선학교에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결손가정학생 또 소년소녀가장, 특수학급 학생,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확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하는 것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학비지원을 지원해야 할 입장에 건강보험을 3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과 물론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중식지원대상자 속에 학비지원관계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의 소관업무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고등학교만 해서 8,275만원하고 사학 4,455만원이 요번에 예산이 증가 됐어요.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체육과에 학생중식지원이 2억 9,359만 9,000원과 사학지원이 7,12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식대상학생이 오늘도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비율로 따져봐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과별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기준점을 도교육청에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평체과에서는 말도 못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는 별로 늘은 것이 없어요. 사실 외부에서 피부에서 닿는 것은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기준점이 과별로 다르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평체과의 초등학교 중식지원비가 이번에 5억 5,30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지원대상자가 변동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 못된 건지 측정을 잘못된 건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예산을 짰건지?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고지원금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인원이 만 3,259명입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한 10%정도 가산해 가지고 만 4,657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지원일수가 연간 18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토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220일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 외에 자체부담금이 더 늘어나고, 또 주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면 지원인원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저희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가지고 벽지지역이나 농촌지역은 300원 또 1식당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 해당되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항상 초등학교에서는 조금씩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중·고등학교에 부족되는 예산은 초등학교예산에 감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성영용 위원**

시간관계상 자세한 질문은 더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성영용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예비비가 28억 3,784만 5,000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

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요 금액가지고 이번 태풍피해라든가 향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작년같이 폭설피해가 많다든지 여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나를 가부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대처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말고 교육문화회관에서 건립비 해서 국고 받은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한지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질문 이기수 위원님도 남아있고 진옥경 위원님도 있고 저도 좀 남아있습니다. 세 분 질의를 마쳤는데 어차피 오후에 속개해서 이 예산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세 분 위원들 질의하셨고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서 오후속개를 14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송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기수**

이기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총예산 1조 1,400억 중에 거의 209억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63억이 승인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억이라는 돈은 잉글리시빌리지 그것 때문에 다시 편성된 액수이고 이렇게 보든지 하면 63억에다가 26억 하면 89억을 뺀다면 사실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본다면 대개 필요한 곳에 증액을 하고 감액할 곳은 감액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서검사 때 저희가 불용액의 과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의 규모와 집행사이에서 그 차액을 잘 관찰하셔서 감액한 것은 요번 예산편성에 애

를 쓴 흔적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할 것은 잉글리시빌리지가 본예산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됐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간 거하고 추경에 들어갔을 때 하고 어느 문제점은 없습니까? 결국은 사업의 차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고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간다면 실제 조성하는 기간상에도 숫자상으로는 몇 달 차이는 아닙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업무의 또는 공사의 진척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간사 이기수**

국장님 제 질의는 올 12월달에 편성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승인 됐었어야 차질 없이 우리가 진행할텐데 추경에 됴므로 해 갖고 여러 가지 몇 달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문제, 차이점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

다.

● 교육국장 김전원

지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넣지 못했던 것을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1차 추경에 됐다면 5월부터 됐을 그럴 사항인데 지금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추진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감사 이기수

아까 고규강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번은 우리가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갖고서 교육감의 상당히 중점적인 사업중에 하나니까 회의에서 삭감되는 일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사실 잉글리시 빌리지를 건립하는 얘기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역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통해 갖고서 영어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며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물론 요즘 교육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채널에서 중앙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청취하고 있지만 지역방송국과도 협의를 해서 말입니다. 일정부분 좋은 지방에 있는 강

사들이라든지 또는 Native Speaker들을 이용해서 지역방송에서도 영어하는 프로그램을 삽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역방송국과도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는 생각입니다.

요것도 외국에는 정서교육차원에서 방송국과 교육청사이에 협의해 갖고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결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영어프로그램 또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방송국과 협의해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얘기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이런 EBS교육방송이나 하는 차원까지 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짧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영어관심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 또는 생활영어와 관련된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감사 이기수

전에도 정서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역방송과 협의하라는 내용을 수년 전에도 한번 감사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학교에서도 어느 중학교를 방문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음악과

생활영어에 대한 문장을 음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가 쌓여 갖고서 영어 말이 트일 수 있는 애기지 갑자기 열흘 해 갖고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학이라는 얘기는 하나 하나 문장이 쌓이고 습득이 되고 하여야만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애기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학교마다 크게 돈 안 들어 갑니다. 화장실이던지 학생이용시설에 문 열든지 하면 음향으로 말입니다. 어느 문장 해 갖고 딱 나온다면 학생이 10번 들어갔다 나오면 문장 하나 암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교장선생님도 하실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다목적교실건립 고규강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위원을 오래 하다 보면 다목적교실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4대에 있을 때는 그게 결국은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로

부터 따오든지 하면 그 예산이 충북교육 예산의 전체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우리가 따졌습니다. 그랬는데 종전에 알고 있기는 그건 그냥 교육부 전체예산 중에 한 부분을 따오는 건데 충북교육예산은 큰 영향을 안줄거더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전에 다목적교실이 옛날에는 강당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무조건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당을 짓기 불편한데 또는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실자체가 이게 증·개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인데 그런 예산에 우선해서 결국은 편중되어 있어 갖고서 다목적 교실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실개축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재정투자를 할 수 없게끔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역교육청이나 지역 학교에서 요구되는 그런 요구만 가지고 참고하지 마시고, 도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학교에 대해서 전부 내구연한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해 갖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건립을 해 주고 다목적교실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는 애 젓 더 준다는 형식으로 써 자꾸 교육청에 얘기만 하든지 하면 이걸 해 준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재정투자가 불균형하게 이게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겠지만 철저히 그걸 연구를 해서 갖고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은 꼭 염두해 두고 앞으로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보면 교실 다목적교실 같은 것은 교실개축을 할 적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지금 다만 시군 이렇게 보면은 별로 불균형스럽지 않지만 초·중·고를 나눠놓고 보면 상당 부분 불균형스럽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균형있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은 교육위원회 내에 전국교육위원들 중에서도 각 도에 한 두명씩 해 갖고 교육재정투자확대위원회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수시로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본다든지 하면 지금 장관의 교부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교부금이라는 얘기는 국회승인을 얻기 전에 아직 편성이 확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줄여야 된다는 건의를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장관의 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기에 내려오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향시 늦게 내려옴으로써 예산 편성이라든지 공사에 차질을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관도 그 재정을 반드시 국회의원들한테 승인을 거쳐야지 되는 얘기인데 그 항목을 막연하게 교부금속에 넣어 갖고서 늦게 이렇게 각 도에다가 내려주는 바람에 지역교육청에서는 공사가 늦어지고 또는 동절기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역교육청에서 장관한테 건의해 갖고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 줄여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재정투자확대위원회 같은데서도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집행청에서 같이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국세의 11분의 1로 되어 있던 것이 행자부가 이

미 100분의 4로 줄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걸 지금 100분의 6으로다가 이렇게 줄이는 거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행자부하고 같이 될지 아니면 교육부가 요구한 대로 100분의 6이 될지 결국 지금 수준의 한 반정도 줄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줄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 **간사 이기수**

설명자료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19페이지에 단재기념관 설치에 9,000만원이 됐는데 그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단체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 **단체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

단체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백남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재기념관 설치 현재 본관 1층에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시공간에 한 30명정도가 되는데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예산규모에 말입니다.

석교초등학교와 모충초등학교 관사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관사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건 학교에서도 동의해 갖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학교요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 **간사 이기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그럼 그 예산은 학교에다가 재투자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일단은 우리 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학교에다가 다 투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간사 이기수**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까 합니다.

35페이지에 위약금내역이 쪽 있어 갖고서 위약금을 우리가 변상케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위약금 받은 것보다도 공사의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요 내용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체상금입니다. 그 내역은 공사라든지, 설계용역계약, 물품구매라든지 또는 사안

에 따라서 계약자체를 해지한 그런 유형에 따른 지체상금과 해약금인데 대다수가 공사와 설계용역에서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할 때에 공기내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 또는 일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해서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감독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지체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페이지 57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 자산취득비중에서 교원단체운영에서 컴퓨터, 프린터, 고성능 소형녹음기, 디지털사진기 이렇게 해 갖고서 거의 410여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원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단체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시설 필요한 소요물품인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중등교육과장 연준**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담당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교조나 한교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 교원단체 교섭을 하기 위한 단체담당반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사 한 분하고 일반행정직 두 분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소관과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증원이 됐습니다. 일반행정직이 증원됨으로 해서 사무용 기기가 또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한 대 더 구입하게 된 거구요.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카메라하고 고성능 녹음기를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품을 구입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 **간사 이기수**

거기에 첨가해서 지금 교원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전교조에 얼마 그 다음 교원단체연합회에 얼마 또 다른 단체에 얼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물임대비 1억, 1억하고 그 다음에.....

● **중등교육과장 연준**

건물임차비로 나가는 그 부분 이외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간사 이기수**

아니 그건 1억, 1억 해 갖고 양단체에 2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전교조가 사무실 하나 더 확장하는 바람에 5,000만원인가 얼마 나갔고 또 그 후에 먼저 예산에서

우리가 승인된 것이 있을 텐데 한번 전체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연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기수**

그러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 갖고서 전교조, 교원단체연합회, 한교조 이렇게 해 갖고서 건물임대비 또 비품구입에 대한 보조 이런 것을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해 갖고서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알았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옥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도의회에서 부결된 잉글리시타운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관련

해서 그것이 운영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지 지금 영어교육 같은 경우들을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계획을 삼고 계시는지 우선 질의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초등학생은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학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중학교는 3학년 학생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가 되겠네요.

● **교육국장 김전원**

네.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런 계획중에 교사풀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는지 이미 그런 계획들이 서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건물을 그냥 건립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이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 건물건립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지역에서 교사풀을 확보하고 계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잉글리시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은 원어민교사를 현재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한 인원 그것을 위해서 현재 신청한 인원이 지역교육청으로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조성이 되면 활용할 인원입니다만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또 인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교육청인원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올 사람들을 금년도에 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저희 적정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안될 것을 대비를 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채널로 해서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필교육청과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적자원을 쓰고, 거기서 인적자원이 저희가 필요한 인원대로 다 안오면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있는 거기 교수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명예교육관이라고 그럴까 저희교육청에서 해당지역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저희가 교원정원이 부족한 편입니다마는 정원이 금년도에 이 인원까지 예상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을 최대인원 10명, 최소인원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식으로 임

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견형태로 해서 그쪽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외에도 우리지역 내에 영어사용권 국가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그런 분들이나 또 퇴직하시는 영어과 선생님들이 이쪽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촉해서 인력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군요.

● 교육국장 김전원

우선 이 사업이 안돼서 그 인원을.....

● 진옥경 위원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의사를 일단 타진해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인력을 확보한 후에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건립여부가 다시 올라올 때는 그래도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 두고서 지금 다시 이것을 올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외인력을 모셔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여기에 숙박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건물 세우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운영부

분에서 지금 너무 계획이 인력초빙에 관한 부분이 너무 확정적인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이게 건립이 확정되면 저희가 건물을 세우고 하겠지만 전문직도 거기 근무할 분들도 지역에서 총정원제 맞추기 때문에 전문직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를 주겠다 하는 답신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걸 전문직 증원하는 건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전문직 중에서 할애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에는 전문직을 2명, 그 다음에 교사를 8명, 도우미요원은 저희가 필요한 대로 하겠지만 안되면 방학 때 같은 때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근무하실 수 있는 시기가 방학 때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평일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과, 그 다음 원어민은 잉글리시타운에서 숙소가 이번 예산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원어민숙소까지 다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어민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도내에 있는 원어민 숫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몇 명이 올지는 아직 9월 1일자보다가 교체가 되고 그러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들이 신청은 25명인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여건 때문에 얼마가 올지는 완전한 계약은 아직 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계약은 좀 이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실력있는 분들 사실은 질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단체에서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투입한 예산에 상응하는 그런 효과가 날까, 그냥 하나의 만들어지는 어떤 시설의 유휴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감을 갖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부분들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고, 또 부실한 그런 것들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셔서 지역에 교육청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방학 때 하실 거라면 차출을 요청하시던가 해서라도 가능하면 내실있게 대외적으로도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잉글리시타운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그 보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어민교사에게 월 23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채널로 해서 모셔오려면 보수가 올라야 되거든요. 300만원 정도로 해서 얘기가 되어서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잉글리시타운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모셔오거나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질관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종래에는 외국인이면 됐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섭외를 하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진옥경 위원**

나중에 그것들이 통과가 되거나 실현될 때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각과별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교육과에 관련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이 42명에서 82명으로 40명이 증원되죠?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런지?

●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지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관 협의회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을 전국적으로 1,000명을 더 배치한다고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40명을 배정 받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각 특수통합학급 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게 2007년까지로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정무**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그럼 지역에 특수교육보조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학급이나 이런데 모두 배치하려면 모두 몇 명이 필요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정무**

지금 전부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관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다 주면 좋죠

● **진옥경 위원**

명수가 총 토탈 그러니까 최소한 학급으로 1명 정도를 배치하게 되면 충청북도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정무**

현재로는 재작년에 2명이 작년에 4명 해서 지금 42명이 있고 앞으로 40명하면

82명입니다.

앞으로 특수학급이 제가 통계를 오늘 특수교육보조원 교육이 있어서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나가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대해서 각 학교 특수학교에 배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꾸준히 이것들을 요청을 한 적이 있고 결국 국가에서 이런 것들 예산을 마련해서 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의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된 학교가 있을텐데 요번 40명까지 합쳐서 82명이 각 어느 학교에 배치되어 계신지 선생님의 성함과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들을 꼭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초등교육과장 정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중도교육과 중복교육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복이라는 건 장애가 몇 가지가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중도특수.....

●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도 제가 알기에는 중증이 심한.....

● 진옥경 위원

정도가 심한 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유아종일반 환경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각 유치원마다 배정된 액수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액수가 다른가요? 인원에 따라서 액수가 책정이 된 것인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각 시군에 아동수에 비례를 해서 공립이 8개 유치원, 사립이 1개 유치원해서 9개 유치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청주는 창신병설유치원이 1,550만원, 충주는 예성병설유치원이 1,550만원, 충주의 사립 상지유치원이 900만원, 제천의 의림병설유치원이 950만원, 보은의 삼산병설유치원이 1,450만원, 옥천의 죽향병설유치원이 1,450만원, 진천의 삼수병설유치원이 1,550만원, 괴산의 증평병설유치원이

1,450만원, 음성의 수봉병설유치원이 1,550만원 해서 전부 1억 2,4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할 때 환경개선은 주로 어떤 내용을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까?

● 초등교육과장 정무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주로 아이들의 인격도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이에 맞는 그런 환경이.....

● 진옥경 위원

교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초등교육과장 정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을 한 다든지 난방시설 또 바닥을 교체하든지 싱크대, 식기소독기 유치원별로 사업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 진옥경 위원

정해진 액수 안에서 각각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냥 사용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있는데 사업설명서 47페이지 지금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은 주로 취미활동에 집중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무슨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학과목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게 초등학교와 관할입니다. 여기에 강사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 초등교육과장 정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학교별로 영역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컴퓨터하고 태권도 하는데가 있는데 하면 강사 구하기 어려운데는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골고루 강사가 풍부하면 여러 가지를 아이들 적성에 맞는 것을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대개 농촌으로 가면은 강사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으로 농촌으로 가면 컴퓨터나 강사 구하기 쉬운 것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선가 매식비 및 지도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강사들이 시간이 얼마나 됐길래 이것이 매식같은 것들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재교구 및 순회강사비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매식비 및 지도비라는 명목으로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지금

●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 내용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 진옥경 위원

예산성립이전.....

죄송합니다. 이건 사교육비경감대책에  
관련한 부분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인데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이군요. 사교육비경감대책운영비  
및 지도비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중등교육과 55페이지입  
니다. 사업별설명서 67페이지고 사항별설  
명서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성립이전  
사용내역에 보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  
분이거든요.

● 중등교육과장 연준

중등교육과장 연준입니다.

지금 사업말씀하신 거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길래 매식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녁식사를 걸칩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예. 교육부에서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  
환으로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대상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  
까? 일인당 어떻게 나오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일인당이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저희들  
이 신청액을 받았습시다. 인문계고등학교  
하고 실업계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  
로 해서 받았는데 인문계고등학교에서 44

개교가 신청을 했고 실업계고등학교에서  
13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급당 36만  
6,000원으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분배를  
했구요.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로테이션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십니까? 아니면 한 분이 이  
거를 다 하십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주로 이것은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방  
과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비로써 지원이 된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사교육비경감인데 이게 고  
등학교들인데 특기적성입니까? 그러면 이  
것이 교과목이 아닙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보충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필요한.....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간을 지  
금 하는데 이게 36만 6,000원이면 선생님  
이 몇 분이 오시고 일인당 얼마를 시간당  
받으시게 되는지 제가 산출근거를.....

● 중등교육과장 연준

요거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서 분배를 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

어지는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은 여기에 산출근거가 없는데요.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학부모부담으로 한 적들이 있었죠. 학부모들이 돈을 거둬서 선생님들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들에서도 그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이 선생님들의 수고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시간당 만약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선생님이 얼마 정도를 받고 계시는지 학부모들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해야 되는지

● 중등교육과장 연준

보충학습비로 지금 지급되는 것은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보통 2만원에서 2만 5,000원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아니 이건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신청한 학교들은 추가로 그것들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들을 요청한 것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교육부에서 4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그 배분을 신청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학교들의 학부모들은 좀 덜 내도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것은 매식비로도 쓸 수 있고 특기적성으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매식비로 쓸 수 있고 운영비 각종 수당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히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 중등교육과장 연준

아니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 특기적성교육 그런 차원이거든요. 특기적성교육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보충학습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특기적성에서는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그러니까 보충학습은 보충수업이 아니라 보충학습은 전과 끝난 다음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특기적성도 수익자 부담입니다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이 사교육비경감대책차원에서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학부모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하는 보충학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고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비를 학교에서 신청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액수를 필요한 대로 주는 건데, 그 내용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전체를 다 부담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학습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저녁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수당을 늘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들어온거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제 말씀은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 그걸로 인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이 말씀대로 이 제목대로 사교육비가 경감됐느냐 이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왜 그러나 하면 종례에는 자율학습비 같은 것을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저녁식사도 제공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 돈에서 나가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던 자율학습비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고, 특히 특기적성교육비를 부담하던 것을 고등학교 전체를 다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가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를 다 이 액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글썄 뭐 일부라도 경감이 되면 괜찮은데요. 아까 뒤에서 담당자님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부모들이 시간당 2만원이든지 2만 5,000원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중등교육과장 연준

그거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보충학습

비는 그거는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대현

국장님 듣고 있기가 좀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의 요지는 진 위원님 양해하세요. 핵심의 요지는 지금 사교육비 경감된 차원에서 지원된 국가예산이 진 위원의 요지는 그 해당학교에 희망한 학교하고 희망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희망한 학교는 학부모의 부담이 절감되느냐 이런 쪽에 핵심이 있는데 여기 기본을 착각하고 있어요. 중등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어디 가셨네요.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요번 사교육비경감으로써 과거에는 용어를 쓰지 못하던 보충수업이라는 걸 쓸 수 있는 우리 사교육경감대책에 나왔던 그 부분이거든요. 수익자부담입니다. 2만원, 3만원 그걸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종래에 해왔던 특기적성교육에 방과후 수업 특기적성 거기에는 교과영역도 들어가지만 교과영역 아닌 부분도 많이 들어가요. 영어, 취미활동도 들어가고 수학이라고는 표현 안하지만 수학동아리그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럴 적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금 수당 저녁값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희망한 학교

는 옛날에 들어갔던 부분에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은 별도로 그냥 하는데 그거 말고 이런 과거에 특기적성교육 해오던 부분을 희망 안한 건 줄 수 없는 부분 그걸 좀 분명히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대상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교과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충수업하고 지금 특기적성교육하고 그것이 개념이 계열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같은 방과후 교과목 끝나고 나서 하는 보충수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의 부담은 보충수업비로 그냥 내면서 지금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내려오는 돈들은 선생님들에게 지금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부의 학교에만 가는 것들도 문제지만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과연 경감이 되는가 이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과 진 위원 말씀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중등교육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보충학습의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산

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교육비경감대책 제목은 추진지원이라고 하면서 내려온 그 내용이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법인데, 이것은 보충학습 현재하고 있는 보충학습비를 학생들이 내는 것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래의 특기적성활동을 지금은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교과외의 것들입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김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교과이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이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고등학교에도 있고 꼭 일반계고등학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기적성교육차원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지금 방과후 특기적성활동의 내용 고등학교에서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저한테 각 학교별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바람에 보충수업과 지금 혼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과원교원이라고 있습니다. 교원인 사관리부분에서 사립 과원교원 특채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양백여상의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폐교가 됐는가요? 일단 그것부터 질의드립니다, 양백여상.

● 교육국장 김전원

폐교결정이 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 교육국장 김전원

현재 금년도 1학년을 모집을 안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졸업하고 나면 완전히 폐교가 됩니다. 2006년 2월 28일로 폐교가 됩니다.

● 진옥경 위원

2006년도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학교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전원

현재 23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이 23분을 전부 흡수할 수 있는지?

● 교육국장 김전원

23분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저희 교원수급조절상 저희한테 필요하다라는 건 맞지만 들어와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지금 7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가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거든요.

● 교육국장 김전원

그래서 금년에 한 학년이 폐지가 됐으니까 금년의 일부하고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특채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우선 7분하고 내년에도 또 그 나머지의 절반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하게 되는데.....

● 진옥경 위원

그럼 21분이잖아요. 7분씩만 하면은

● 교육국장 김전원

그런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학교로부터 그분들 중에는 교직을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세도 많고 다른 사업계획이 있거나 또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이쪽 공립으로 전환되어서 오기를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희망하는 인원 18분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생계가 망막해지면서 이 것이 흡수가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요것들은 잘 희망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교원단체운영 관련해서 아까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데 5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업별설명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 교원단체운영 관련한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요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데 글썽저는 고성능소형녹음기와 디지털사진기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고성능디지털녹음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속기록을 할 수 있는 속기사가 없습니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타자를 치고 그러는데 역시 말이 빠르다거나 또는 산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을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그 기록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디지털녹음기를 하나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사진기는요?

● 교육국장 김전원

사진기는 회의하는 모습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상황이라든가 교섭을 하거나 이럴 때 기록 같은 것을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할 때도 쓰고 저희 기록에도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해놨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고압적인 느낌이 들어 가지고 녹음기하고 카메라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결국은 요원들이 늘어나면서 말씀이죠. 아까 분권혁신팀도 있고 테스크포스팀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적마다 부서에 따른 운영비가 자산취득비가 그 요원의 숫자만큼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약 분권혁신팀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20명에 모든 분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엇그저께 듣기로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뽑은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테스크포스는 좀 뒤에 여쭙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활성화추진단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분권혁신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 위원장 송대현

기획관리국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사무실 구조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집기나 이런 거를 한 사람이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 가지고 떼어가지고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팀이 하나 구성이 되게 되면 새로운 집기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 분이 쓰던 것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은 새로 구입하다 보면 자산취득비가 그렇게 들곤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아까 분권혁신팀이 20분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존의 요원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새로이 충원된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일단 질의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존에 있던 분들이 3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새로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을 보면은 새로 꾸미다 보면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무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 가지고 중등교육과에서도 그런 업무 시험에 관련한 업무에 관련해서도 프린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따로 지금 구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어떤 특정한 아주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떼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과안에 데스크포 시스템이 있으면서 별도의 책상, 의자, 컴퓨터 이것이 전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팀들이 늘어날 적마다 이렇게 집기까지 같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이 교육비라는 것에 한정이 있는 것이고 예산지침 같은 부분에서도 각 부서운영비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실제 교육비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설정되기도 했는데, 자꾸 팀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집기들뿐만 아니라 무슨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비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세트로 다 같이 늘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지금 이번에 지방분권혁신팀이 생긴 것은 한시적으로나마 새롭게 담당관제도가 하나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 **진옥경 위원**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을 수요자인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 볼 때 방만하다고 지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과학실업교육과가 있는데요.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 **진옥경 위원**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남았는데요.

● **위원장 송대현**

계속 빨리 좀 정리하시죠.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과학실업교육과에서 실고 산업체 현장연수가 있는데 교사들을 산업체에다가 현장연수를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산학연계 해 가지고 지금 공업계가 51명 그리고 상업계가 45명 그리고 농업분야가 9명입니다.

그런데 농고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양순하고 또 그렇다들 하고 저는 그런 분야들이 지금 많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산업체현장연수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이 돈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이 그럼 농업은 산업체가 도대체 어디냐 무슨 원예시장이거나 아니면 농업시장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액수도 15만원정도의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이래 가지고 연수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실업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전문교과 산업체연수관계는 국고예산으로 해서 매년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성으로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직무연수형식으로 해서 전문성제고를 하기 위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시간이 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시간이상 직무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과인원으로 봐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공업이나 상업은 굉장히 많은데 농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원 수가 농과는 적고 공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한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직무연수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비율이 그러면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그렇습니다.

순수 농고가 3개고 농공고가 2개이기 때문에 인원비례해서 직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거 15만원 가지고 어떤 연수가 이루어지는 저는 참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과에 대해서 NEIS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쟁점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들과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입니다.

NEIS가 지금 2002년 10월 1일부터.....

● 성영용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말씀하시죠. 성 위원님

● 성영용 위원

다른 회의는 예산부분만 하시고 그 외에는 행정질의 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성 위원님 알았습니다. 진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핵심만 요령 있게 답변도 핵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사전에 그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유지보수비가 2억 가깝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에 그래서 시작도 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운영상태를 알고 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다하니까 일단 이것부터 그러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설치하고 3년째 운영을 해 보니까 학기 초 2월, 3월에 전학교가 대들어서 일하게 되면 굉장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하드용량도 늘리고 서버를 교무·학사 3개 영역을 분리해서 설치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분리비용과 폭주에 따른 추가 용량.....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하드용량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계상될 예정입니까?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번에 국고 5대5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아니면 올해의 특수적인.....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올해의 특수적인 이런 일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멀티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동영상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행정의 어떤 홍보를 위한 멀티비전인가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교육정책이나 시책을 홍보하고 또 교육 우수사례를 홍보해서 교육발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진옥경 위원

이건 어디에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여기 지금 강당 저쪽 동편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벌써 이미 설치하셨군요.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이 금액은 설치비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기존 예산에서, 영상자료제작비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원격 강의시스템 운영

에서 가상스튜디오 등 1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셨는데, 지금 EB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인터넷강의들도 여러 가지로 ICT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교육과학연구원에 매치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도 원격강의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상스튜디오를 교육청산하에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또 다른 필요성이 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원격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확대되고 여기에는 있는 내용은 버추얼스튜디오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방송할 때 아나운서가 가상스튜디오로 가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강의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받는 사람도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는 이런 스튜디오시스템이라서 상당히 첨단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콘텐츠만 보여 주는 것보다는 이런 버추얼스튜디오 형식으로 해야만 더 흥미를 유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한 중식지원대상 학생의 근거 또 올해의 대상 각급 학교 학생의 숫자 그리고 그것에 어떤 기준이 있죠. 무슨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것에 어떤 근거한 그런 숫자들을 각급 학교별로 좀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3,400여만원의 저소득층학생 중식지원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집행은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지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편성전에 사용하거나 하신 건 아니죠.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신지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별도로 추가로 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액수를 조금씩 늘리는가요? 요정도면 일인당 들어가는 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지금 현재 과목조정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들 지원대상 인원이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초등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중·고등예산을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제2회 추경예산이 그래서 3,400만원은 중·고등학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황간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 봤는데 산골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산골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점심지원도 조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을 거기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때 가정에서 그것들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금년도부터는 석식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 진옥경 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다해 줍니까?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석식지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대상자들이 있어요?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네.

● 진옥경 위원

그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학생들이 결식학생으로 파악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된 인원은 지금 현재 도내에 8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산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부담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숙사를 보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비용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런 석식까지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부서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절약을 해서라도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시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할 것 같고 그런 것에 지원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학교보건·급식담당 함정기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우리 정회관계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남았습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거의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계속하세요.

● 진옥경 위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시설과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아까 용어나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지금 강당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혼재되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다목적실 보수가 있는데 그것들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보수책정이 된 것은 내구소요연한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개축은 못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대성여중인가 어디를 가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강당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아직 내구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직 내구연한도 조금 들쭉고 대성여중 같은 경우에는 대성학원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투자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 학원에 그래서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 진옥경 위원

여기에 지금 저는 다목적실 보수비용으로 대성여중이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들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주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정도가 아닌지 내구연한이나 개축시기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고려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서도 당분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보은중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가봤을 때 보은중학교의 다목적실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이 다른 것보다는 훨씬 제가 알기에는 63년인가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당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강당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진옥경 위원

그럼 대성여중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성여중 강당은 건축한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대성여중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학교측에서 보존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느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너무 열악하다고 계속 불만을 하시는데 저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보수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그래서 그 관계를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건물을 학교에서 보존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보수비로 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어디 교장선생님 말씀이십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학교측 얘기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보존하시고 싶다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도 됩니까? 저는 그것들이 학교구성원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학생들의 그런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보존한다면 그야말로 교육박물관처럼 어느 학교입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그것들이라면 모르되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는 대상으로 삼습니까? 다목적교실을 이것은 보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대헌

오래됐지만 제 질문은 한 가지만 딱 하고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한데요. 질문 겸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심하게 짚어 주셨고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다목적교실하고 다목적실하고 개념차이를 설명하다가 고규강 위원 질문에 깊이 못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차이 다목적교실과 다목적실 차이를 말씀하셨던데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다목적교실하고 다목적실하고 차이는 사실 크기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목적교실은 권장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상당부분 크고 그거보다 작은 교실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규모가 다목적실입니다.

모두 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가지고 수준별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해당하지 지금은 사실은 혼재해서 쓰면서 크기정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대헌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강당이라는 말은 잘 안쓰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네. 안씀니다.

● 위원장 송대헌

안쓰고 다목적교실 또 다목적실 그 차이는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면 강당과 체육관을 겸하게 규모가 큰거고, 다목적실은 체육관정도는 할 수 없고 교실 두서너개 합친 소규모의 사이즈를 다목적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위원장 송대헌

그런 축에서 하나 당부드릴 것은 제출해 주신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저 끄트머리 12쪽인가 여기하고 시설사업현황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불일치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긴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군남초 같은데도 다목적교실 밑에 하부개념에 다목적실로 표시를 했어요. 위에는 다목적교실 그 밑에는 다목적실 또 청원 남이초 같은 것도 다목적교실 신축해 놓고 그 밑에 하부 아래단계에서는 다목적실로 표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숫자도 보면 다목적실이 2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헤아려 보니까 3개인지 2개인지 숫자가 안맞습니다.

또 다목적교실 보수는 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음성에 있는 맹동초 표기만 봐도 다목적실 신축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하부설명에는 다목적교실일동 10억 4,000 이렇게 위에는 다목적실 밑에는 다목적교실 시설사업현황 이걸 보세요. 보편은 제가 말씀한 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서가 아니라 이걸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뭐 이렇게 중요하나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이 서류가 도의회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위원들이 또 심사한 서류 아닙니까?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도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통계수치라든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 국장님이 제시한 그런 개념쪽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이나 본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한쪽에 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의견이 어떻습니까?

####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저희 아침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가 맞고 시설과에서 한 자료가 구분 없이 환특환경 이 부분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동해 갖고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 성영용 위원

위원장님?

#### ● 위원장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 ● 성영용 위원

저는 어떤 질의사항 보다도 지금까지 예산관계를 다루어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중점 편성하는 방침은 우리교육청이 향후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서 즉 교

욕감이 선거공약을 실천한 것과 또 지역 사회 학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교육과 모든 시설면이 나가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중점편성을 해야 할 때는 지금까지는 문제된 것 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중점편성을 할 때는 앞에 타이틀에 중점편성의 몇 가지 타이틀을 해 났으면 거기에 의해서 분명하게 중점을 두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타이틀은 중점관계는 이래해 놓고 그 뒤에 내용은 어디 갔는지 용두사미예요. 전혀 없어요.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늘 느껴온 거지만 과별 예산편성할 때는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급식이나 학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과별 유사한 있어서는 과별 협조해서 어느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과별 특수성을 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라든지 여기에는 과별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수성을 가미해서 앞으로 해 주시면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

떤 경우에 이래 보면 지적은 안했습니다. 마는 과도한 과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해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정말 삼가해 주셔서 예산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과도하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치고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 분명히 제가 조금 심한 말씀을 써서라도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송대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적한 것 다 들으셨습니다만 잉글리시타운에 대해서는 고규강 위원, 김남훈 위원, 이기수 위원, 진옥경 위원님 모두 한결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담당관계서는 지적한 부분을 잘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효용성 이런 문제를 잘 살펴주시고, 또 다목적교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용어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다목적교실의 형평성이나

타당성에서 건립기준, 설립기준 명쾌하고 투명성있게 해 달라는 주문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오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점도 명쾌하게 해 주시고 또 과학교육진흥이 물론 국고에서 부담금이 확 떨어져 내려와서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예를 만들지만 청원교육청 같은데 보면 절반이하 이렇게 막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담담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반정도 4억이 2억정도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11개 시군교육청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산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돈을 적게 줬으니까 도리 없다 하고 무 자르듯이 반반 잘라 버리는 건 쉽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계수조정 안하고 바로 의결하십니까?

● 위원장 송대헌

그럼 계수조정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진옥경 위원

예.

● 위원장 송대헌

진옥경 위원님의 계수조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충무과소관 업무추진비중 청원가산업무추진비 8만 4,000원, 자산취득비중 컴퓨터외 2종 구입비 1,792만원, 관서운영비중 기본행정사무용품비 105만원, 특근매식비 63만원, 여비에서 152만 6,000원 등 총액 2,12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저는 대성여중 다목적실 개축에 관련한 예산중에 지금 해당학교에서 건물골조에 대한 안전진단서가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새로 지어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해도 결국 부모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성여중 다목적실 예산에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구연한이 과도하게 경과된 건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요청 시에는 건물골조에 대한 안전진단서라든지 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결과를 첨부해서 함께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의견을 첨부합니다.

● 위원장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이 지금 동의에 말하자면 안전진단 등등해서 이 예산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등을 위해서 보류하는 게 좋다는 소수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1조 1,497억 1,495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이기수,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성영용,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9. .

위원장

송대헌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6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4. 8. 16.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4. 8. 19. (목)  10:3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1. 초등 중식지원비 5억 5,308만원 감액이유?(성영용 위원)
2. 전교조, 교총, 한교조 등에 건물임대비나 비품구입비 등으로 지원된 내역(이기수 위원)
3. 특수교육보조원 학교별 배치현황(진옥경 위원)
4. 고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활동 학교별 지원내역(진옥경 위원)
5. 교원들의 산업체현장연수비 15만원 사용내역(진옥경 위원)
6.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사업비 지원근거 및 학교별 학생수 (진옥경 위원)

# 서 면 답 변 서

평생교육체육과

질문의원	성영용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 □ 질문 요지

초등 중식지원비 5억 5,308만원 감액사유는?

## □ 답변 내용

- 초등 중식지원비 5억 5,308만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외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벽지, 농촌지역 학교 식품비(1인 1식당 농촌 300원, 벽지 1,000원) 지원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집행 차액이 발생되며, 학교별 식품구매에 따른 입찰 차액, 학교별 급식일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 한편,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금년도 예산 편성시 보다 1,335명(중 506, 고 829) 증가하여 연말까지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예산을 감하고 중·고등학교 예산을 증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서 면 답 변 서

중등교육과

질문의원	이기수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질문 요지

- 교직원단체 지원현황

답변 내용

단체명	지원내역	지원금액(천원)			비고
		2003년	2004년	합계	
교 총	교육활동	3,000	5,000	8,000	
	임 차 료				
	내부시설				
	소계	3,000	5,000	8,000	
전교조	교육활동	3,000	5,000	8,000	
	임 차 료	7,161	62,000	69,161	
	내부시설	21,000		21,000	비품포함
	소계	31,161	67,000	98,161	
한교조	임 차 료				
	내부시설	해당없음			
	교육활동				
	소계				
합 계	교육활동	6,000	10,000	16,000	
	임 차 료	7,161	62,000	69,161	
	내부시설	21,000		21,000	
	소계	34,161	72,000	106,161	

# 서 면 답 변 서

초등교육과

질문의원	진옥경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 □ 200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

○ 총인원 : 43명

- 지역교육청 배정 : 41명

교육청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인원수	14	6	6	1	2	1	2	2	3	3	1	41

- 특수학교 배정 : 2명 (청주혜원학교 1명, 청주혜화학교 1명)

## □ 200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학교 및 보조원명

순	지역교육청 (인원)	학교명	보조원 성명	순	지역교육청 (인원)	학교명	보조원 성명
1	청주(14)	주성초병설유	고상미	4	청원(1)	남일초	오정은
		중앙초	노정열	5	보은(2)	동광초	임선미
		가경초	원은영			보은중	이현주
		창신초	김미경	6	옥천(1)	이원초	박미정
		사직초	이순주	7	영동(2)	영동초	황자순
		교동초	김동화			황간중	정은경
		용암초	정성숙	8	진천(2)	만송초	오앵란
		풍광초	이희우			진천중	권혜정
		강서초	홍은선	9	괴산(3)	칠성초	김경희
		남성초	정태옥			삼보초	최소현
		남성중	우민경			괴산중	권영숙
		청주남중	최애자	10	음성(3)	맹동초	진정임
		중앙여중	윤정아			남신초	박영진
		청주동중	정미섭			수봉초	이성자
2	충주(6)	교현초	권은정	11	단양(1)	매포중	박현옥
		예성초	지영근	계	41명		
		연수초	김영숙				
		산척초	이경숙	특수학교(2)	청주혜원	윤석진	
		충일중	김광숙		청주혜화	이에스터	
		충주중앙중	공효순				
3	제천(6)	동명초	김미경	총계	43명		
		의림초	김영미				
		남당초	강성이				
		제천중앙초	안성권				
		화산초	허태임				
		입석초	이현선				

# 서 면 답 변 서

중등교육과

질문의원	진옥경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질문 요지

고등학교 방과후특기적성교육활동 학교별 지원내역

답변 내용

I. 2004.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

(공립고)

(단위 : 천원)

연번	학 교 명	계	연번	학 교 명	계
1	청 주 고	12,469	22	괴 산 고	4,396
2	충 북 고	12,091	23	목 도 고	1,099
3	금 천 고	10,992	24	음 성 고	10,625
4	예 술 고	4,396	25	단 양 고	0
5	체 육 고	0	26	단 산 고	1,099
6	외 국 어 고	8,793	27	청 주 여 고	13,556
7	상 당 고	12,824	28	중 앙 여 고	13,923
8	주 성 고	7,694	29	충 주 여 고	10,992
9	홍 덕 고	7,694	30	예 성 여 고	10,992
10	서 원 고	7,694	31	제 천 여 고	12,091
11	충 주 고	11,358	32	보 은 여 고	3,297
12	주 덕 고	1,832	33	충 주 농 고	3,000
13	제 천 고	12,457	34	제 천 농 고	1,000
14	과 학 고	0	35	청 주 기 계 공 고	5,000
15	오 창 고	9,892	36	충 주 공 고	1,000
16	옥 천 고	8,793	37	의 립 공 고	1,000
17	청 산 고	2,198	38	증 평 공 고	2,500
18	영 동 고	6,595	39	충 북 인 터 넷 고	2,000
19	황 간 고	2,198	40	제 천 상 고	2,500
20	진 천 고	6,595	41	옥 천 상 고	2,500
21	광 해 원 고	3,297		소 계	102,570
	소 계	149,862		총 계	252,432

예산과목 :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특별활동지원 세항)특별활동지원 세세항)교육사업비  
 사업명)특기적성교육활동 목)학교회계전출금

## II. 2004.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

(사립고)

(단위 : 천원)

연번	학 교 명	계	예 산 과 목
1	세 광 고	10,992	장)학교교육 관)고등학교 항)특별활동지원 세항)특별활동지원 세세항)교육사업비 사업명)특기적성교육활동 목)사학지원비
2	운 호 고	10,992	
3	청 석 고	10,992	
4	신 흥 고	10,992	
5	충 원 고	4,030	
6	대 원 고	10,992	
7	중산외고	8,794	
8	세 명 고	10,992	
9	보 은 고	4,397	
10	형 석 고	6,229	
11	일신여고	13,190	
12	충북여고	10,992	
13	대 성 고	10,992	
13	매 괴 고	0	
14	충주상고	1,500	
15	영동인터넷고	5,000	
16	청주여상	3,500	
17	충주여상	2,000	
계		136,576	

## III. 2004.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배부 현황

(국립고)

(단위 : 천원)

연번	학 교 명	계
1	충북대사대부설고	6,595
2	한국교육대부설고	4,397
계		10,992

예산과목 : 장)학교교육 관)기타학교 항)특별활동지원 세항)특별활동지원 세세항)교육사업비  
사업명)특기적성교육활동 목)기타경상이전비

### ※ 배부기준

- 일반계고등학교(신청학교 : 44교)
  - 366,400원(1학년당 배부기준액)×각 학교 학급수
- 실업계고등학교(신청학교 : 13교)
  - 32,500천원(학교 월별 소요예산 신청액×4개월분)

# 서면 답변서

과학실업교육과

질문의원	진옥경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 □ 질문 요지

농업계열 연수비가 150천원으로 공업, 상업계열에 비하여 적게 책정된 이유는?

## □ 답변 내용

- 농업계열은 과목성격상 전문연수기관의 위탁연수 보다는 대부분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이 되며 자율연수는 30시간이하로 편성되어 150,000원으로 책정되었음. 공업과 상업계열은 대부분 위탁연수이며 위탁연수는 60시간 기준으로 위탁경비가 270,000~450,000선으로 교육내용 및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서 면 답 변 서

평생교육체육과

질문의원	진옥경 교육위원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 □ 질문 요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비 지원근거 및 학교별 학생수는?

## □ 답변 내용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11조(급식지원)에 의거 학기중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하여 중식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04. 8월 현재 20,954명(초9,839, 중5,556, 고5,559)에 대하여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이외에 결손가정, 노동력부족, 실직가정 학생중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원대상 학교수	필 수 지 원					교내 심사위원회 추천					합계	비고
		소년 소녀 가장	국 기 생 수 자	민 중 활 동 수 자	사 회 지 설 용 수	특 수 학 급	소 계	결 손 가 정	노 동 력 부 족	실 직 가 정	기 타 극 빈		
초	246	85	3,520	252	392	4,249	2,727	388	350	2,125	5,590	9,839	
중	120	95	2,163	144	185	2,587	1,208	197	222	1,342	2,969	5,556	
고	74	132	2,714	74	181	3,101	915	184	223	1,136	2,458	5,559	
계	440	312	8,397	470	758	9,937	4,850	769	795	4,603	11,017	20,954	